딥테크종합보험

(약관분류코드 : 6072-0000-20260101)

현대해상

보험계약 명세표

Item 1. 보험증권
- 보험상품명
- 보험증권번호
- 보험계약일

Item 2.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명
- 주소
- 법인형태
- 사업내용
- 담보사업

Item 3.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주소지의 표준시 기준

Item 4. 담보 내역 및 보상한도액

담보내역	보상한도액
제 1 부문 **기술행위 배상책임**	
- 기술행위 전문직업 배상책임	
-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 미디어활동 배상책임	
- 확장담보	
제 2 부문 **사이버위험관리**	
- 사고 대응	
- 기업 휴지	
-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 사이버 갈취	
제 3 부문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	
- 일반배상책임	
- 생산물 배상책임	
- 확장담보	
· Cyber 배상책임	

Item 5. 자기부담금

Item 6. 보험료

Item 7. 보험조건

본 계약은 현대해상화재(주) 의 정식 위임받은 대표자에 의해 계약되었고 보험증권은 정식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날짜

보통약관

개요
이 **보험약관**을 구성하는 문서는 함께 읽어야 하며 정의된 어떤 용어나 표현은 이 **보험약관**전체에 서 해당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험료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증권명세**와 이 보험의 조건, 면책사항 및 제한사항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 1 조 기술배상책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증권명세** 제 3 항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 및 본 약관에서 해당 담보조항이 언급된 것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담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담보는 해당되는 대로 **보험한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술 배상책임 보상조항

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다음의 배상책임으로 인해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1.1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

기술행위

1.2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보안행위

1.3 미디어 배상책임

미디어행위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확장담보

확장담보와 관련하여 **보험증권명세** 제 3 항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확장담보 및 본 약관에서 해당 확장담보가 언급된 것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담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확장담보는 보험계약 제 1.1 조에만 적용되고 다른 조항에 적용되거나 담보를 다른 조항에 확장하지 않습니다.

1-A 계약적으로 인수된 특허 책임

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술 행위**에서 발생해 **보험 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계약적으로 인수된 특허 책임**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1-B 지연손해배상예정금

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술 행위**에서 발생해 **보험 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예정금**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1-C 귀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금액

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술 행위**에서 발생하고 **보험 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귀하**가 **귀하**의 고객에게 법적으로 환불할 의무가 있게 된 금액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에 대해 **귀하**의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 지불합니다.

1-D 법정출석비 및 진술비용

당사는 다음 비용을 **귀하**에게 보상합니다.

A.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부당행위**에서 발생하고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법정출석비**

B.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부당행위**에서 발생한 **조회**로 인해 **귀하**가 지불했거나 **귀하**에게 발생된 진술 비용.

1-E 손실완화 비용

당사는 **보험 기간** 내에 **지배그룹** 일원에 의해 발견되어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술 행위**에서 발생한 실제 또는 잠재적 **손해배상청구**를 완화하기 위해서만 발생된 **완화 비용**에 대해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귀하**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담보는 **귀하**가 **기술 행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완화해야 할 **귀하**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면제하지 않습니다.

1-F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 또는 문서의 손실

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술행위**에서 발생해 **귀하**에게 지불할 법적 의무가 생긴 **문서 복구 손해배상금**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1-G 귀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미지불된 금액

오로지 잠재적 **손해배상청구**를 완화하기 위해, **당사**는 다음 경우 **귀하**가 **귀하**의 고객에게 청구했지만 수금할 수 없었던 금액을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지불합니다.

A. **귀하의 제품**이 그 고객에게 공급되었거나 **귀하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청구되었다.
B. **귀하**는 그 금액을 수금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조치를 취했다.
C. 고객의 지불 거부와 **귀하**의 수금 노력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했다.
D. 보험 계약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그렇지 않았다면 본 **보험약관**에 의해 보장될 경우, 해당 고객의 지불 거부의 근거가 고객에 의해 **기술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표현되었다.
E. 그러한 금액을 수금하려는 **귀하**의 지속적인 노력이 **귀하**에 대한 보복 **손해배상청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수금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당사가 이러한 확장담보에 따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i. **귀하**는 본 확장담보하의 지불 대상인 금액에 대해 고객에 대한 모든 수금 노력을 중단하기로 동의합니다. **귀하**가 계속 지불을 추구하는 경우, 면책조항제 5.6 조의 C 항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ii. 본 확장담보에 의거 **당사**에서 **귀하**에 상환한 금액의 대상인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와 관련해 **귀하**의 고객이 여전히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본 **보험약관**에 의거 지불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단일 손해배상청구**의 일부가 됩니다.
iii. 본 확장담보에 따라 **당사**가 하는 지불에는 청구된 금액에 포함된 이윤 요소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v. 본 확장담보에 따라 **당사**가 한 지불은 배상책임의 인정 또는 추정 또는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보험 계약 제 1.1 조에 따른 담보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H 비상 손해배상 청구비용

당사는 **보험 기간** 내에 **지배그룹** 일원에 의해 발견되어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술 행위** 관련 손해, 영향 및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보상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귀하**가 긴급성으로 인해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없었고 그러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 비용**이 발생한 후 30 일 이내에 **당사**의 동의를 구한 한 **당사**는 본 **보험약관**의 조건과 일치하는 소급 동의를 제공합니다.

제 2 조 사이버위험관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증권명세** 제 3 항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 및 본 약관에서 해당 담보조항이 언급된 것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담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담보는 해당되는 대로 **보험한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사이버위험관리 보상조항

당사는 다음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2.1 사고 대응

보험 기간 내에 **지배그룹** 일원에 의해 발견되어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사이버 사고** 또는 **기업휴지 사고**로 인한 **사고 대응 비용**

당사는 다음에 대해 **귀하**에게 보상합니다.

2.2 기업휴지

보상 기간 내에 **기업휴지 사고**에서 발생하고, 그 기간이 **대기 기간**을 초과하며 **보험 기간** 내에 **지배그룹** 일원에 의해 발견되어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기업휴지손실

2.3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보상 기간 내에 **기업휴지 사고**에서 발생하고, **보험 기간** 내에 **지배그룹** 일원에 의해 발견되어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

2.4 사이버 갈취

보험 기간 내에 **지배그룹** 일원에 의해 발견되어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사이버 갈취 사고**로 인한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 및 **사이버 갈취 비용**

제 3 조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증권명세** 제 3 항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 및 본 약관에서 해당담보조항이 언급된 것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담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담보는 해당되는 대로 **보험한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상조항

3.1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사고**의 결과로 **보험기간** 내에 최초 발생한, **계약상 배상**에서 **귀하**가 지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확장담보

보험계약 확장담보와 관련하여 **보험증권명세** 제 3 항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 확장담보 및 본 약관에서 해당 담보조항이 언급된 것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담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확장담보는 보험 계약 제 3.1 조에만 적용되며 다른 조항에 적용되거나 다른 조항에 담보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3-A 제품회수

당사는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회수 사고**로 인한 제품 **회수** 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합니다.

3-B 추가피보험자

A. **발주처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상**
피보험자의 정의는 본 보험증권에서 별도 문서로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한 제 3 자를 포함하며, 해당 계약에서 요구하는 범위 및 한도 내에서만 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인정되며 이 보험 계약의 약관 및 조건을 따릅니다. 이 확장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된 제 3 자는 해당 당사자가 피보험자라고 가정하여 이 보험 계약의 모든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B. **임대장비의 임대인**
피보험자의 정의는 **손해배상청구**일 이전에 체결한 서면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통해 **귀하**가 장비를 임대한**제 3 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본 확장담보에 따른 담보는 서면계약 또는 임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임대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로만 확장되며 서면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이 유효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만입니다.

C. **시설의 임대인**
피보험자의 정의는 **손해배상청구**일 이전에 체결한 서면 임대 계약을 통해 **귀하**가 시설을 임차한 **제 3 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본 확장담보에 따른 담보는 서면 임대 계약의 대상인 시설의 소유, 사용 또는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확장되며 **귀하**가 그러한 서면 임대 계약하의 임차인인 기간 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만입니다.
본 확장담보하의 시설은 **귀하**가 임대한 특정 위치만을 가리키며 전체 건물 또는 전체 건물의 공통 구역에 대해 **귀하**가 책임있는 것으로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전체건물 또는 전체 건물의 공통 구역으로 결코 확장되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해 상기와 반대되는 내용에 상관없이, 본 확장담보는 어떤 식으로든 건물주에 의해서나 건물주를 대신하여 수행된 구조 변경,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D. **판매자 담보**
피보험자의 정의는 모든 **판매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지만 다음의 조건에서 **귀하의 제품**의 유통 또는 판매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와 관련해서만 **귀하**와 **판매자** 간의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한도까지 그리고 본 **보험약관**에 따르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a) 본확장담보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귀하**가 승인하지 않은 명시적 보증
 ii. **판매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제품** 형태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경
 iii. **귀하**의 지시에 따라 검사, 시연, 시험 또는 부품을 교체할 목적으로만 포장을 풀어 원래 용기에 재포장한 것이 아닌 한 재포장
 iv.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시설에서 수행된 시연을 제외한 시연, 설치, 정비 또는 수리 작업
 v. **귀하**에 의해 유통 또는 판매된 후 라벨을 붙이거나 라벨을 갈아 붙이거나 **판매자**에 의해서나 **판매자**를 위한 다른 것 또는 물질의 용기 부품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제품**
b) 본 확장담보는 **귀하**가 그러한 **제품** 또는 재료 부분 또는 그러한 **제품**에 딸려 있거나 그러한 제품을 포함하는 용기를 취득한 사람이나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본확장담보에 따라 보장되는 **판매자**는 본 **보험약관**의 모든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한 마치 **판매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본 **보험약관**의 모든 조건이 적용됩니다.

3-C 보호, 관리 또는 통제

면책조항 제 5.9 조는 다음에 대한 **재물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귀하**가 임차한 시설
B. **귀하**가 보호, 관리 또는 통제하는 **차량**(**귀하**가 소유, 사용하거나 **귀하**를 대신해 소유, 사용하는 차량 이외). 그러나 해당 차량이 주차장 운영자로서의 수입이나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귀하**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주차장에 있는 동안만 해당됨.
C. 관리자, **피고용인** 및 방문자의 의류와 소지품 또는

D. **귀하**에 의해 또는 **귀하**를 대신해 해당 재물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귀하**의 점유 하에 있는 다른 재물(**귀하**가 소유하지 않음) 또는 **귀하**의 시설에 있는 재물. 그러나 확장담보 3-C (D)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 **당사**가 지불하는 최대액은 **보험증권명세**의 해당 **보험한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D 자동차 초과보상

면책조항 제 5.37 는 다음의 경우, 차량 또는 차량에 딸린 트레일러의 **피보험자**에 의해서나 **피보험자**를 대신한 소유, 점유, 통제 또는 사용으로 인한 **재물손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그러한 책임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효력있는 별도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B. 본확장담보는
 a. 캐나다와 미국 또는 그 관할권 내의 영역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미화 5,000,000 달러
 b. 세계의 그 밖의 지역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미화 1,000,000 달러 또는
 c. 법에서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최소 한도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고**의 결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배상액과 관련하여 본 확장담보에 따른 **당사**의 최대 총 책임은 그러한 배상 한도와 **보험증권명세**에 명시된 **보험한도**의 차액입니다.

3-E 위기대응 비용

오로지 **귀하**에 대한 잠재적 **손해배상청구**를 완화하기 위해, **당사**는 본 **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보험 기간** 내에 **귀하**가 지불했거나 **귀하**에게 발생되었고 동 **보험 기간** 내에 또는 보험의 만료 60 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보고된 **위기 대응 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합니다.

본 확장담보에 따라 **당사**가 지불한한 그 자체로는 배상책임의 인정 또는 추정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담보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F 핵심인력

제 3 자가 입은 **개인신체상해**에만 적용되는 **위기 대응 비용**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또한 **사고**에 의해 발생된 지배그룹 일원이 당한 **개인신체상해**에서 발생하는 **위기 대응 비용**에 대해서도 **귀하**에게 상환합니다.

3-G 사이버 배상책임

면책조항 **제** 5.8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다음의 결과로 직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보험 기간** 내에 처음 발생한부상, 질병을 원인으로 발생된 사망, 수치심, 정신적고통, 정신적 상해 및 충격을 포함하여 사람이당한 부상, 질병 또는 **재물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A. **컴퓨터악성행위** 또는 **보험적용 대상 컴퓨터시스템**의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 또는

B.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악성 행위** 또는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방지하지 못하게 하는, **귀하**에 의해서나 **귀하**를 대신해 판매, 공급, 개조, 제조, 수리, 정비, 설계, 시험, 설치 또는 처리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결함 또는 부적절성

제 4 조 정의

본 **보험약관**에서 굵은 활자체로 사용될 때 다음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4.1 **행위(Act)**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기술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또는 **미디어 행위**

B.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사고**, **기업휴지 사고**, 또는 **악성 사용 또는 접근**.

4.2 **사이버 테러 행위(Act of Cyber Terrorism)**란 사회적, 이념적, 종교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거나 정부 또는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억압하거나 경제를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단독 행동이든 조직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든 조직 또는 정부와 연계해서든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을 야기하거나 컴퓨터 악성 행위를 가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가하는 무력 또는 폭력 또는 위협을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3 **테러 행위(Act of Terrorism)**란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국민 또는 일반 국민의 일부분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성질상 또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상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유사한 목적과 관련해 단독행동이든 조직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든 조직 또는 정부와 연계해서든 사람, 사람들 또는 사람들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 또는 위협의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4 **항공기(Aircraft)**란 대기 또는 공간에서 날거나 이동하도록 만들어지거나 의도된 배 또는 물건을 의미하며 공기부양선을 포함합니다.

4.5 **석면(Asbestos)**이란 합금, 부산물, 화합물, 활석, 먼지 또는 기타 물질 또는 폐기물에서의 그 존재 또는 사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면을 의미합니다

4.6 **사업**(Business)이란 **귀하**의 일상적인 상업적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

i. **피고용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 및/또는 음료의 판매 또는 공급 또는

ii. **귀하**에 의한 응급처치, 보안 및 구급차 서비스의 제공과 **귀하**의 시설의 유지관리

B. **귀하**에 의한 주로 **피고용인**을 위한 운동, 사회, 복지 조직의 제공 또는

C. **귀하**의 관리자, 파트너 또는 **피고용인**을 위해 **피고용인**이 수행한 개인적인 업무

4.7 **기업휴지 사고(Business Interruption Incident)**란 전적으로 및 직접적으로 다음에 의해 발생하고, **재물손해**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 불가, 중단 또는 방해 또는 **귀하의 데이터**의 수집, 손상 또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A. **컴퓨터 악성행위**

B.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

C. **인적 과오**

D. **정보통신 보안**의 실패

E. **프로그래밍 과오** 또는

F. 위의 A, B 또는 D 의결과로 **귀하**에 의해 통제되는 전기 시스템의 정전, 서지 또는 감쇄

4.8 **기업휴지 손실(Business Interruption Loss)**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기업휴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세 이전의 **귀하의 순이익** - 소득세 이전에 실제로 번 **귀하의 순이익**

B. **귀하**의 계속적인 정상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그러나 **기업휴지 사고**에 의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고, **기업휴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불되거나 발생되었을 한도까지만 해당됨.

기업휴지 손실에는 **대기기간**중에 발생한 위의 항목 A 및 B 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업휴지 손실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금(Excess)**은 제 7 조 - 자기부담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4.9 **상황(Circumstances)**이란 **지배그룹** 일원의 위치에 있는 자연인이 본 **보험약관**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는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도록 하는 모든 사실을 의미합니다.

4.10 **손해배상청구(Claim)**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귀하**에 대한 서면 요구
B. 소장 접수 또는 유사한 다른 고소장 접수로 시작된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비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구하는 **귀하**에 대한 민사 소송 절차
C.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비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구제를 구하는 **귀하**에 대한 중재절차
D. 오로지 보험계약 제 1.2 조, **규제적 소송절차(Regulatory Proceeding)**에 따른 청구

4.11 **손해배상청구 비용(Claims Expenses)**란 필요하고 합리적인 다음 비용을 의미합니다.

A.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및 방어에 있어 **당사**에 발생하거나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귀하**에 발생한 법률 비용, 수수료 및 비용
B. **당사**가 신청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없을 때, 항소 채권, 가압류 채권 또는 유사한 채권에 대한 보험료
C. 보상조항 제 3.1 조 하에서만 인당 및 **보험 기간** 동안 누적으로 10,000,000 원까지 **개인신체 상해**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응급 처치에 대해 피보험조직에 발생한비용
D. 보험계약 제 1.3 조에 따라 **당사**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홍보 및 위기 소통 서비스에 대해 발생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수료
E. **손해배상청구, 행위** 또는 **사고**의 조사 및 방어에 있어 **당사**에 발생하거나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귀하**에 발생한 기타 비용

손해배상청구 비용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귀하**의 **피고용인**, 이사 또는 임원 또는 **귀하**의 일원 또는 파트너의 급여, 수수료 또는 비용
ii. **손해배상청구**, **행위**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귀하**에 발생하였을 비용. 법률 수수료, 손해사정비 또는 기타 수수료, 또는 간접비 또는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i. 벌금 또는 **규제 범칙금**을 포함한 기타 과태료

4.12 **컴퓨터 악성 행위(Computer Malicious Act)**란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 통신장비 또는 인프라에 물리적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귀하의 데이터**를 창출, 삭제, 취득, 수집, 변경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행해지는 악성 행위 또는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악성 접근이나 해킹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악성 행위**에는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DDos attack), 또는 악성코드, 랜섬웨어, 크립토웨어,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웜 및 논리 또는 시한폭탄의도입, 또는 **보험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또는 내부의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접근을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파괴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파일 또는 명령어의 도입이 포함됩니다.

4.13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이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론 관련 모바일장치, 입출력장치, 데이터저장 장치, 네트워킹 장비 및 저장 영역 네트워크 또는 SCADA 및 ICS 시스템을 포함한 기타 전자 데이터 백업시설을 의미합니다.
확장담보 3-G 에만 해당되는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는 물론 관련 모바일 장치, 입출력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킹 장비 및 저장 영역네트워크 또는 SCADA 및 ICS 시스템을 포함한 기타전자 데이터백업 시설 또는 그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4.14 **소비자보상기금(Consumer Redress Fund)**이란 불리한 판결 또는 규제적 소송절차의 해결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금**의 지불을 위해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lief) 기금에 **귀하**가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보상기금에는 세금, 벌금, 과태료, 명령 또는 제재금을 구성하는 지불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15 **계약상 배상(Contract Indemnity)**이란 다음 경우, **제 3 자**가 당한 본 **보험약관**에 따라 담보가 제공되는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 조직**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피배상자)의 책임을 떠맡는 **피보험 조직**의 사업과 관련된 서면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A. 부상 또는 손해가 그런 계약 또는 합의의 체결 후 최초로 발생한**행위** 또는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
B. **행위**가 다음에 의해 행해진 경우
 i. **피보험 조직**에 의해 또는 **피보험 조직**을 대신해, 또는
 ii. 피보증자에 의해,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피보험 조직** 과 피보증자 간 서면계약 또는 합의에 따른 경우에만.

4.16 **계약적상 부담하는 사고대응비용** (Contractually Assumed Incident Response Expenses) 이란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와 관련된 서면 계약 또는 합의의 조건에 따라 **귀하**가 **제 3 자**를 대신해 물게 될 의무가 있는 **사고 대응 비용**을 의미합니다.

4.17 **계약적으로 인수된 특허 책임**(Contractually Assumed Patent Liability)이란 다음의 경우에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에 대한 침해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 조직**이 **제 3 자**의 책임을 떠맡기로 합의한 서면 계약 또는 합의의 조건에 따라 **귀하**가 **제 3 자**를 대신해 물게 될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의미합니다.

A. 계약이 확장담보 1-A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시키는 **기술 행위** 날짜 이전에 **피보험 조직**에 의해 **제 3 자**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B. 침해 혐의가 **제 3 자**에 의해 사용되고 배상금을 제공하는 서면 계약의 대상인 **피보험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기되었다.
C. **제 3 자**가 배상금을 제공하는 서면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보험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D. 침해 혐의가 **피보험 조직**의 행위 또는 **피보험 조직**을 대신해 행해진 행위 또는 **피보험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본 정의의 목적상, **피보험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피보험 조직**에 허가된 특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18 **지배그룹(Control Group)**이란 최고재무책임자, 최고 경영자, 법무 자문위원, 리스크 관리자, 최고정보책임자, 최고정보보안책임자, 최고기술책임자, 데이터보호책임자 또는 **피보험 조직**의 이에 상응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지배그룹**에는 피보험 조직의 보험증권을 입수하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피보험 조직에 고용된사람(들)이 포함됩니다.

4.19 **법정출석비(Court Attendance Cost)**란 실제 소득의 손실을 포함하여 본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및/또는 방어에 대한 협조를 **당사**가 **귀하**에 요청한 것과 직접적으로 및 전적으로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4.20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이란 다음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A. **귀하**에 의해 임대, 소유 또는 운영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B. **귀하**와의 서면 계약에 의해 제 3 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귀하**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컴퓨터 시스템**

4.21 **위기 대응 비용(Crisis Response Expenses)**이란 오로지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시장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정 목적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다음 비용의 일부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신뢰가 **제 3 자**가 당한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당히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위기 대응 비용**에는 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만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A. 커뮤니케이션, 홍보에 지불했거나 기타 위기대응 회사에 조언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수수료
B. 방송, 전자, 인쇄물, 텔레비전 및 전화안내, 소통 및 고지비용
C.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초과 근무 보수, 운송 및 숙박 비용

D.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조달, 보수, 운송 및 숙박 비용, 또는
E. **사고** 후 제공된 즉각적인 응급처치

위기 대응 비용에는 다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제품**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다른 재물 또는 그 대체품의 비용
ii. **제품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비용
iii. **제품** 또는 그러한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상품 또는 다른 재물을 조정, 검사 또는 수리하는 비용
iv. **제품**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다른 재물에서 **제품**을 제거하는 비용
v. 대체**제품** 또는 대체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상품 또는 기타 재물을 설치하는 비용
vi.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환급 (환급과 관련된 비용 포함)
vii. **제품** 또는 그러한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상품 또는 기타 재물의 실제 발생하였거나, 주장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악성 변경 또는 오염과 관련된 비용
viii. **제품**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기타 재물 또는 그 대체품에 대한 통제력 회복과 관련된 비용
ix. 그러한 **제품** 결함,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되거나 지불되었을 비용
x. **사고대응 비용**
xi. **사이버 갈취비용**
xii.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
xiii. **손해배상 청구비용**
xiv. **제품 회수 비용** 또는
xv.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자기 부담금**금액

4.22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 (Cyber Extortion Damages)**이란 법적으로 허용되고 보험이 가능한 경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없음)를 얻어 **사이버 갈취 사고**를 종료하기 위해 **귀하**가 지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2.4 조에 따라 당사자 지불할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의 최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험약관**이 없을 때 **당사**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게 될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23 **사이버 갈취 사고(Cyber Extortion Event)**란 **귀하**에게 **화폐**를 요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를 나타내면서 귀하에게 하는 확실한 모든 위협 또는 연결된 일련의 확실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A.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기밀 또는 독점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 누설, 유포, 파괴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
B.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되거나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명령어 또는 전자 정보를 변경, 손상, 조작, 무단 사용, 삭제 또는 파괴하려는 의도
C.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또는 운영 체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품질 또는 성능을 수정, 변경, 손상, 파괴, 삭제, 오염 또는 저하시키도록 설계된 **악성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는 의도
D.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의 인증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액세스를 방해하는,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려는 의도
E. 인증된 사용자의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목적으로 **악성소프트웨어** 또는 기타자료를 도입하려는 의도 또는
F.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의 제한 또는 방해 의도

4.24 **사이버 갈취 비용(Cyber Extortion Expenses)**은 정보기술 컨설턴트, 홍보 컨설턴트, 법률 및 규제 컨설턴트 및 위기 협상가를 고용하기 위해 발생한 금액을 포함하여 **사이버 갈취사고**에서 직접 발생하는, **당사**의사전 서면 동의(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없음)를 얻어 발생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4.25 **사이버 사고(Cyber Incident)**란 **사고 대응 비용**의 필요성을 만드는 실제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다음사고를 의미합니다.

A. **사이버 갈취 사고**에 대한 위협 또는 실제 행해진 행위를 포함하여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악성행위, 인적과오, 프로그래밍과오, 정보통신보안**의 실패,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 또는 기타 위협 또는 행동
B.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행위** 또는
C. **귀하**에 의해 통제되는 전기 시스템의 정전, 서지 또는 감쇄

4.26 **손해배상금(Damages)**이란 보상적 손해배상금, 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인정금 및 본 **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로 **귀하**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정산금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금에는** 본 **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로 청구자에게 발생되는 법적 비용 및 소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A.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 **손해배상금에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되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가장 선호하는 적용 가능한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손해배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포함하여야 합니다.
B. 보험계약 제 1.2 조, **손해배상금**에는 또한 **소비자보상기금**, **지불카드 손실 및 규제 범칙금**이 포함됩니다.
C. 확장담보 1-A, **손해배상금**에는 또한 **계약적으로 인수된 특허 책임**이 포함됩니다.
D. 확장담보 1-B, **손해배상금**에는 또한 **손해배상예정금**이 포함됩니다.
E. 확장담보 1-C, **손해배상금**에는 또한 **귀하의 제품** 및 **귀하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F. 확장담보 1-F, **손해배상금**에는 또한 **문서 복구 손해배상금**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금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귀하**에게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는 금액
ii. 본 **보험약관**이 해석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험을 들 수 없는 사항
iii.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iv. 벌금 또는 과태료 (**규제 범칙금** 제외)
v. 특정 이행을 포함한 금지명령 또는 기타 비금전적 또는 선언적 구제 또는 그러한 구제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
vi. 확장담보 1-C 에서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수수료 또는 수익의 손실, 수수료반환
vii. 확장담보 1-E 에서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로열티 또는 **귀하**에 의하거나 **귀하**의 감독하의 **서비스** 재수행
viii. **귀하**에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이익, 보수 또는 재정적 이점의 환수
ix. 본 **보험약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사고** 또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하는 것 이외의 금액

4.27 **데이터(Data)**는 모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저장, 생성, 사용 또는 전송되는 모든 정보, 사실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에는 컴퓨터와 컴퓨터 부속품(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하드 또는 플로피디스크, CD-ROM, 테이프, 드라이브, 셀, 데이터처리 장치 또는 전자 제어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미디어 또는 기타전자 백업 장치포함)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데이터**에는 실제 하드웨어 또는 유형 자산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4.28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Data and System Recovery Costs)**이란 다음을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A. 손상되었거나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재구성하는 것. 이러한 **데이터** 복구 또는 재구성 비용은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 3 자 포렌식 회사가 **데이터**의 복구 또는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 해당됩니다.
B. **기업휴지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상태 또는 기능으로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것
C. **기업휴지 사고**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또는
D. **당사**의 사전동의(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됨)가 있을때 다음을 하기 위한 비용
 i.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교체 또는 개선, 그러나 다음 경우에만 해당됨.

ii.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된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거나 개선된 표준, 상태, 기능 또는 버전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교체 또는 개선하는 비용이 해당항목을 수리 또는 복구하는 비용보다 적거나 같을 것으로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 제 3 자 포렌식 회계 회사가 **기업휴지 손실** 금액 결정 또는

iii. **기업휴지사고**가 **귀하**의 사업이 완전히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나 문제를 유발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귀하**의 사업을 완전한 운영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그 밖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임대한 외부장비의사용
ii. 사업 연속성 계획에 따른 대체작업 방법의 구현
iii.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비용
iv. 증가된 인건비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손실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것 이상의 수준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업데이트, 교체, 복구 또는 개선하기 위한 비용
b)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식별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c) 위의 D.i. 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 복구, 교체,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또는 개선하기 위한 비용
d) **영업 비밀**을 포함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발생한 비용
e) **영업 비밀**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의 경제적** 또는 **시장 가치** 또는
f) 기타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4.29 **문서 복구 손해배상금(Document Recovery Damages)**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또는 **귀하**가 그러한 **데이터** 또는 문서를 위탁한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데이터** 또는 문서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A. **당사**는 **데이터** 또는 문서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당사**는 **데이터** 또는 문서의 일상적인 마모 또는 점진적인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에 의해 지명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승인할 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계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D. **데이터** 및 문서에는 **화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30 **피고용인(Employee)**이란 다음과 같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A. 임시직이든 영구직이든 상근직이든 시간제이든 또는 계절직이든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귀하**에게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B. 해당 서비스의 수행에 있어 **귀하**에 의해 통제되고 **귀하**의 지시를 받으며 **귀하**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
C. 급여, 임금 또는 수수료를 통해 **귀하**에게 보상받는 사람 또는
D.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귀하**에게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직원, 파견 근로자 또는 인턴

4.31 **자기부담금(Excess)**이란 각 보험계약과 확장담보에 적용되는 **손실**의 첫 번째 부분과 지급할 다른 보장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해당 보험계약 또는 확장담보하의 담보에 관한 **보험증권명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제 7 조 - 자기부담금에 따라 적용됩니다.

4.32 **비용(Expenses)**이란 **손해배상청구 비용**과 다음에 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A.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확장담보에 관해서는 **비용**에는 또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완화비용**, **법정출석비** 및 **진술비용**

ii. 확장담보 1-G 및 확장담보 1-H 에 따라 담보되는 **손실**

B. 사이버위험관리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비용**에는 또한 **기업휴지 손실**,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 **사이버 갈취 비용**,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 및 **사고 대응 비용**이 포함됩니다.

C.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확장담보에 관해서는, **비용**에는 또한 **위기대응비용** 및 **제품회수비용**이 포함됩니다.

4.33 **보고연장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이란 해당되는 경우, 제 8 조-조건에 기술된 담보의 연장 기간을 의미합니다.

4.34 **인적 과오(Human Error)**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선택, 매개변수 설정 오류 또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용인** 또는 **제 3 자**의 부적절한 단일 개입을 포함하는 운영 오류 또는 태만으로 **귀하의 데이터**의 손실, 변경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35 **사고 대응 비용(Incident Response Expenses)**이란 **귀하**에게 발생되었고 다음을 위해 **귀하**가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게 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A. **귀하**의 **사이버사고** 또는 **기업휴지사고**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 3 자 컴퓨터 포렌식 회사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또는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 관리, 저장, 파기 또는 달리 통제하게 하는 것.

B.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해당 비용에 대한 담보를 가장 선호하는 적용 가능한 관할권의 **개인정보 규정**의 소비자 통지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 **개인정보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의사소통 할 법률 또는 규제 고문을 유지하는 것과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제공하는 비용 또는 청문회 참석 비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규정위반을 주장하는 정부 기관의 정보요청 또는 요구에 대한 응답 비용

D.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a.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통지하는 것.

b. 콜 센터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통지 서비스를 유지하여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공개되었거나 달리 손상된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통지하는 것.

c. 공인 조사관 또는 신용전문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공개되었거나 달리 손상된 개인에게 최대 1 년의 사기 상담을 제공하는 것.

d. 신용모니터링, 신원 도용 모니터링,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신용동결 또는 사기경보 서비스를 위해 **귀하**가 한 제안 또는 **귀하**를 대신해 한 제안을 수락한 개인의 신용 모니터링, 신원 도용모니터링,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신용 동결, 사기경보서 비스 또는 사기방지소프트웨어 비용.

e. 실제로 **귀하**에 의해 행해졌거나 **귀하**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되고 제 2.1 조-사고 대응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사이버 사고 또는 기업휴지 사고**에서 직접 기인하는 신원 도용의 피해자로 확인된 개인에 대해 제 3 자 신원복원 서비스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f. **사이버 사고 또는 기업휴지 사고**의 결과로 손상된 **귀하**의 명성을 보호 또는 복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광고 또는 관련 소통을 위해 홍보회사, 위기 관리 회사 또는 법률회사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g. 본 **보험약관**에 따라 명시적으로 담보되고 독립 계약자에 의해 실제로 행해졌거나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독립 계약자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귀하**의 구상권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률회사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사고 대응 비용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개인정보 또는 정보통신 보안 통제, 정책 또는 절차를 업데이트하거나 **사이버 사고 또는 기업휴지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거나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

b) 세금, 벌금, 과태료, 금지명령 강제금 또는 제재금

c) **귀하**의 임금, 급여, 내부 운영비 또는 수수료

4.36 **지적재산권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란 실제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다음 행위를 의미합니다.

A. 저작권, 등록의장, 회로배치, 도메인명, 트레이드드레스, 명칭 또는 슬로건의 침해, 또는 상표, 서비스 마크, 서비스 이름 또는 상호의 희석 또는 침해
B. 사람 또는 조직의 평판 또는 성격에 대한 비난 또는 가해, 명예훼손, 비방, 중상모략, 제품비하, 상업상의 명예훼손, 정서적 고통, 정신적 고통 및 악의적인 허위진술 가하기
C. 도청
D. 표절, 불법 복제 또는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 또는
E. 사칭통용

지적재산권 침해에는 **미디어 콘텐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37 **조회(inquiry)**란 업계에서의 조사 및/또는 일상적인 감독, 검사, 준수 또는 이와 유사한 검토 이외에 **기술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정식으로 구성된 법원 또는 재판소 또는 증인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타 기관 앞에서 **귀하**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식 또는 공식적인 조사, 심문 또는 심리(전문 기관 또는 협회의 징계 기구 앞에서의 청문회포함)를 의미합니다.

4.38 **피보험자(Insured)**는 **피보험 조직**과 **피보험 개인**을 의미합니다.

4.39 **피보험 조직(Insured Organisation)**이란 **기명피보험자** 및 그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3 조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하의 담보와 관련하여서만, **피보험조직**에는 또한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할 경우,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4.40 **피보험 개인(Insured Person)**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피보험 조직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피보험 조직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보험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요인물, 파트너, 이사, 임원, 수탁자, 감독위원회위원 또는 피고용인
B. 변호사 자격으로 피보험 조직에 고용되어 2002 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미국)을 준수해야 하는 변호사
C. **피보험 조직**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연인인 **피보험 조직**의 독립 계약자

피보험 개인에는 또한 다음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i. 주요인물, 파트너, 이사, 임원, 수탁자 또는 **피고용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파트너,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가 이러한 주요인물, 파트너, 이사, 임원, 수탁자 또는 **피고용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에만 해당됨.
ii. 사망한 본인, 파트너, 이사, 임원, 수탁자 또는 **피고용인**의 재산 관리자,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가 이러한 본인, 파트너, 이사, 임원, 수탁자 또는 **피고용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에만 해당됨.
iii. **기명피보험자**의 사교클럽 또는 스포츠클럽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임원 및 회원, 그러나 그러한 임원 또는 회원으로서의 각자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동안만 해당됨.

피보험개인에는 감사인, 파산관재인, 청산인, 관리인, 저당권자 등 또는 그들의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41 **보험자(Insurer)**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4.42 **보상 한도(Limit of Insurance)**란 제 6 조 - 보상 한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각 조항, 보험계약 및 확장담보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그렇게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4.43 **손실(Loss)**은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4.44 **지연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란 확장담보 1-B 에 따라 제기된 그러한 지연손해배상예정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시키는 **기술행위**의 날짜 이전에 **피보험 조직**이 당사자로서 서명한 서면계약에 손해배상예정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예정금은 그러한 지연 손해배상예정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피보험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관습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보험 조직**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정치여야 합니다.

4.45 **악성 사용 또는 접근(Malicious Use or Access)**이란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금지되고,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출입, 사용 또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4.46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란 악성 코드, 랜섬웨어, 크립토웨어,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 및 논리 또는 시한 폭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또는 그 안의 **데이터**에 지장을 주거나 해를 입히거나 접근을 방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악성성격의 프로그램, 파일 또는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4.47 **미디어 행위(Media Act)**란 오로지 **귀하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귀하에 의해 실제로 행해지거나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다음 행위를 의미합니다.

A. 사람 또는 조직의 평판 또는 성격에 대한 비난 또는 가해, 명예훼손, 비방, 중상모략, 제품비하, 상업상의 명예훼손, 정서적 고통, 정신적 고통 및 악의적인 허위 진술 가하기.
B. 도청, 불법체포, 무고, 분노 또는 충격적인 행위
C.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하여 표절, 불법 복제 또는 아이디어의 부정사용
D. 저작권, 도메인명, 트레이드 드레스, 명칭 또는 슬로건의 침해, 또는 상표, 서비스 마크, 서비스 이름 또는 상호의 희석 또는 침해. 그러나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주장되는 침해는 해당되지 않음. 또는
E. **귀하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있어서의 과실

미디어 행위에는 **귀하의** 웹사이트 및/또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또는 완전한 접근 결여에 대해 주장되는 청구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차별 또는 차별 행위도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4.48 **미디어 콘텐츠(Media Content)**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인터넷상에서 **귀하**에 의해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배포된 전자 매체를 의미합니다.

4.49 **완화 비용(Mitigation Expenses)**이란 다음의 조정, 폐기, 검사, 회수, 제거, 수리, 교체 또는 철회를 위해 **귀하**에게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A.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서 비스**
B.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가 포함된 재산
C. **귀하의 서비스**가 수행되거나 수행되었던 재산 또는
D. 콘텐츠, 정보 또는 자료

이러한 모든 비용은 **손해배상청구**가 없었다면 **귀하**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했을 비용 이상이어야 합니다.

4.50 **혼합 분진(Mixed Dust)**이란 합금, 부산물, 화합물 또는 기타 물질 또는 폐기물에서의 존재 또는 사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석면, 활석 또는 실리카 및 기타 분진, 섬유 또는 입자의 조합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4.51 **화폐(Money)**란 물리적이든 전자적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든, 통화, 동전, 지폐, 금괴, 수표, 여행자 수표, 등록식 수표, 우편환, 공공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소액환 또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화폐에는 암호화폐, 상품 또는 유형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52 **기명피보험자(Named Insured)**란 **보험증권명세**에 기재된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4.53 **자연인(Natural Person)**이란 이름, 국가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정부 발행 식별 번호, 위치 데이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같은 온라인식별자 등의 식별자를 특정 참조하거나 그 개인의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요소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4.54 **순 손실(Net Loss)**이란 회수 가능한 모든 회수액과 구조 물품을 공제한 후 **회수**의 실제 비용을 의미합니다.

4.55 **순이익**(Net Profit)이란 모든 고정비용에 대한 적절한 준비금을 적립한 후 **귀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4.56 **정보통신 보안**(Network Security)이란 **컴퓨터 악성 행위** 또는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을 막기 위해 **귀하**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귀하**를 대신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57 **사고**(Occurrence)란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예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초래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출을 포함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원천 또는 근원에서 기인하는 일련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사고**로 간주됩니다.

4.58 **지불카드 손실**(Payment Card Loss)이란 **귀하**가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의 결과로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금액이 귀하가 지불카드 산업데이터 보안표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금전배상, 벌금, 위약금, 지불거절, 상환 및 사기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지불카드 손실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최초 벌금 또는 금전배상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지불카드 산업데이터 보안표준의 계속적인 비준수에 대한 후속 벌금 또는 금전배상 또는

B. 개인정보 또는 정보통신 보안 통제, 정책 또는 절차를 업데이트하거나 달리 개선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4.59 **보상 기간**(Period of Indemnity)이란 **기업휴지 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귀하**에게 **기업휴지 손실** 또는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여전히 **기업휴지 손실** 또는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보상기간**은 **당사**의 재량 내의기간 동안 오로지 **당사**에 의해 3 개월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60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어떤 형태로든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자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민 보험 번호(NI Number), 의료 또는 건강 관리 데이터, 기타 보호되는 건강 정보, 운전 면허번호, 주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직불카드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계정 내역 또는 비밀번호

B. **개인정보규정**에 정의된 기타 보호되는 개인적정보

4.61 **개인신체상해**(Personal and Bodily Injury)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사람이 입은 신체적 상해 및 질병(그러한 신체적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수치심, 정신적고통, 정신적 상해 및 충격포함). 그러한 모든 수치심, 정신적 고통, 정신적 상해 및 충격은 그 원인이 된 신체적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불법체포, 불법구금 또는 기타 불법감금

C. 무고

D. 임대인 또는 소유주에 의해 행해지거나 이들을 대신해 행해지는 경우,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 시설 또는 방에 불법 침입하거나 해당 개인을 불법적으로 퇴거시키거나 사적인 점유권에 대한 다른 위반행위

E. 법에 의해 확립된 개인의 보호되는 인간적 특성에 근거한차별, 괴롭힘 또는 분리

4.62 **보험증권**(Policy)이란 **보험증권명세**, 본보험증권 문구 및 특약을 통틀어 말합니다. 또한 본 보험 또는 본 보험에 의해 대체되는 이전 보험을 신청할 때 **귀하**가 **당사**에 제출했거나 **귀하**를 대신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 **당사**에 제출한 제안서 양식 및 정보 또는 진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4.63 **보험 기간**(Policy Period)이란 제 8.8 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전 종료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 **보험증권명세** 제 2 항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4.64 **오염물질**(Pollutant)이란 연기, 증기, 그을음, 흄,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자극제 또는 오염물을 의미합니다.

4.65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Privacy and Network Security Act)**란 **귀하**에 의해 실제로 행해졌거나 행해졌거나 시도되었다고 주장되는, 다음의결과를 가져오는 오류,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행위, 부작위, 과실 또는 의무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A. **정보통신 보안**의 실패
B. **귀하**나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있는 독립계약자가 다음을 처리, 관리, 저장, 파기 또는 달리 통제하지 못하는 것
 i. **개인 정보** 또는
 ii. 어떤 형태로든 **귀하**에게 제공된 비공개, 사적인 제 3 자 기업정보 또는
C. **귀하**에 의한 **개인정보**의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사용 또는 수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정보 규정**의 위반을 초래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위반

4.66 **개인정보 규정(Privacy Regulation)**이란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 의해 규제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수집, 관리, 통제, 사용 또는 공개에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4.67 **제품(Product)**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다음사람에 의해 구성, 개발, 설치, 임대 또는 타인에게 라이선스 부여, 수리, 정비, 처리 또는 달리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유통되는 상품 및 제품
 i. **귀하**
 ii. **귀하**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iii. **귀하**가 자산 또는 사업을 인수한 사람 또는 조직
B. 그러한 상품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기(차량제외), 재료, 부품 또는 장비
C. 다음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임대되거나 놓인 자동판매기 및 기타 재산
 i. **귀하**
 ii. **귀하**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iii. **귀하**가 자산 또는 사업을 인수한 사람 또는 조직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상기 A. - C. 항에 기술된 제품의 적합성, 성능, 품질 또는 사용에 관한 진술 또는 보증
ii. 상기 A. - C. 항에 기술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시사항 또는 경고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
iii. 상기하위조항 A. - C. 항에 기술된 상품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귀하의 서비스**

4.68 **제품 결함(Product Defect)**이란 다음을 제외하고, **귀하**가 소유, 점유하거나 **귀하**에게 대여 또는 임대된 시설을 벗어나서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에서 발생된 모든 **개인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를 의미합니다.

A. 여전히 **귀하**의 물리적인 점유 하에 있는 **제품** 또는
B.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포기한 **서비스**

귀하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귀하**의 계약서에서 요청되는 모든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때.
ii. **귀하**의 계약서에서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iii. 한 장소에서 완료된 **서비스**의 일부가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 이외의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된 때.

제품 결함에는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임대한 **귀하의 제품**과 관련되는 상기 사항이 포함됩니다.

4.69 **제품 회수 비용(Product Recall Expenses)**이란 다음을 위해 **제품 회수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 조직**에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A. 미디어 발표를 포함하여 **귀하**의 고객 및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B.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기 위한 외부조언

C. 구매자, 유통업체, 소매업체 또는 사용자로부터 **귀하**가 지정한 장소로 **제품**을 운송하는 것
D. **귀하**의 정규 **피고용인**이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원의 고용
E. 정규 **피고용인**(봉급이 지급되는 **피고용인** 제외)에게 지급되는 보수
F. 운송 및 숙박을 위해 **피고용인**에게 발생되는 비용
G. 추가창고 또는 저장공간의 임대 또는
H. 재사용할 수 없는 회수된 **제품**과 포장재를 적절하게 폐기하는 것

제품 회수 비용에는 다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결함을 시정하는 비용
ii. **귀하의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다른 물품을 검사, 조정 또는 수리하는 비용
iii. 다른 상품 또는 제품 또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귀하의 제품**을 제거하는 비용
iv. **귀하의 제품**, 그 대체품, 또는 **귀하의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다른 물품의 비용
v. 대체 상품, 제품 또는 **귀하의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다른 물품을 설치하는 비용
vi.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환불 (그러한 환불에 관련되는 비용 포함)
vii. **데이터** 복원, 교체 또는 복구 관련 비용
viii.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비용**
ix. **사고 대응 비용** 또는
x. 시장점유율, 영업권, 평판, 수익 또는 이익의 실현, 유지 또는 복구 관련 비용

4.70 **프로그래밍 과오(Programming Error)**란 한 번 작동되면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 및/또는 작동 중단 및/또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의 개발 또는 인코딩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 과오**에는 완전히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되고 출시 전에 동등한 운영 환경에서 성공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밍 과오가 발생했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할 수 없는 한, **보험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통합,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패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71 **재물손해(Property Damage)**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유형자산의 물리적 손상, 파괴 또는 손실 (유형자산의 사용의 결과적인 손실 포함) 또는
B. 다른 유형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사용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사용 손실

그러한 모든 손실은 이를 초래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재물손해**에는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의 손상, 손실 또는 파괴 또는 사용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사용 손실에는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의 사용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72 **회수(Recall)**란 구매자, 유통업체, 소매업체 또는 사용자로부터 **제품**의 점유 또는 통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73 **회수 사고(Recall Event)**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가 **회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재물손해** 또는 **개인신체상해**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귀하**가 최초로 발견한 것, 다만 다음으로 인해 그러한 **회수**가 필수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 **제품** 제조 시 물질의 우발적 누락
B. **제품** 제조 시 유해 물질의 우발적 유입 또는 우발적 대체
C. **제품**의 제조, 설계, 혼합, 배합 또는 라벨링의 오류 또는 결함, 그러나 그러한 오류 또는 결함이 업계에서 그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됨. 또는
D. 상기 A, B 또는 C 항에 명시된 문제의 결과로 **귀하**에게 **제품**의 **회수**를 요구하는 정부 또는 다른 규제기관의 결정. 단,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회수**가 의도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경우, **귀하**에 의해 **제품**이 제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A, B 또는 C 항에 명시된 문제가발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74 **규제 범칙금(Regulatory Fines)**이란 **규제적 소송절차**하의 명령에 따라 정부 또는 공식적인 정부 기구를 포함하는 규제기관이 규제 또는 공식적인 능력으로서 부과하는 민사 금전적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규제 범칙금에는 법으로 보험에 들 수 없는 민사 금전적 범칙금 또는 과태료, 형사 벌금, 이득 환수 또는 배액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75 **규제적 소송절차(Regulatory Proceeding)**란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귀하**에 대해 실시되는 **귀하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의 결과로 **개인정보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 또는 유사한 문서의 송달로 개시되고 보험계약 제 1.2 조에 따라 보장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보요청, 요구, 민사조사 또는 민사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규제적 소송절차에는 **개인정보 규정**의 형사 위반에 근거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 또는 소송의 일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76 **진술 비용(Representation Expenses)**이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귀하**의 조회 협조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무비용 또는 관련 전문가 감정료를 의미합니다.
진술 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77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는 **보험증권명세** 제 4 항에 명시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4.78 **보험증권명세(Schedule)**는 본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를 의미합니다.

4.79 **제 1 조 총한도(Section 1 Aggregate Limit)**는 **손해배상청구** 횟수, 청구자 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보험자** 수, 보험계약 수 및/또는 보험계약 및/또는 상기 사항의 조합을 포함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든 주장되는 확장담보에 관계없이 **보험 기간**에 대해 **당사**가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손실**과 다른 보장되는 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최대 총액으로 **보험증권명세**에 그렇게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4.80 **제 1 조 및 제 2 조 총한도**는 **손해배상청구** 횟수, 청구자 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보험자** 수, 보험계약 수 및/또는 보험계약 및/또는 상기 사항의 조합을 포함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든 주장되는 확장담보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당사**가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사이버위험관리의 조합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손실**과 다른 보장되는 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최대 총액으로 **보험증권명세**에 그렇게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4.81 **제 2 조 총한도**는 **손해배상청구** 횟수, 청구자 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보험자** 수, 보험계약 수 및/또는 보험계약 및/또는 상기 사항의 조합을 포함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든 주장되는 확장담보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당사**가 제 2 조-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손실과 다른 보장되는 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최대 총액으로 **보험증권명세**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4.82 **서비스(Service)**란 다음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와 관련컨설팅, 직원채용, 훈련 및 기타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사람 또는
B. **귀하**가 자산 또는 사업을 인수한 사람 또는 조직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상기에 기술된 **서비스**의 적합성, 성능, 품질 또는 사용에 관한 진술 또는 보증
ii. 상기에 기술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시사항 또는 경고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

4.83 **실리카(Silica)**는 합금, 부산물, 화합물 또는 기타 물질 또는 폐기물에서의 그 존재 또는 사용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모든 실리카(규산염 또는 유사한 실리콘 화합물 포함)를 의미합니다.

4.84 **단일손해배상청구(Single Claim)**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유발하는 **배상청구**, **규제적 소송절차** 또는 기타 사항이 동일하거나 다른 청구자, **피보험자**, 사건 또는 법적 소송원인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원인 또는 동일한 근본 원인과 관련되어 본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시키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또는 기타 사항을 의미합니다.

4.85 **자회사(Subsidiary)**란 **보험**의 개시 시, **기명피보험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 또는 합작회사로 형성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합니다.

A.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
B. 이사회의 이사 50% 이상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보유 또는
C. 다른 주주들과의 서면 합의로 의결권의 50% 이상을 단독으로 통제

자회사가 **보험기간** 전 또는 **보험기간** 중에 자회사가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본 보험은 해당 **자회사**와 그 **피보험자**에 대해 계속 보장을 제공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i.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그리고 그 법인이 **자회사**였던 동안에 발생한 **기술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행위** 및 **미디어행위**
ii. 그 법인이 **자회사**였던 동안에 **지배그룹** 일원이 발견한 **사이버 사고**, **기업휴지 사고** 및 **사이버 갈취 사고**

사업과 관련한 **사고**의 결과로 **보험 기간** 내 및 그 법인이 **자회사**였던 동안에 처음 발생한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청구비용**

4.86 **기술 행위(Technology Act)**란 다음 결과를 야기하는 실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행위, 오류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다음결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관련행위, 오류 또는 부작위 및 모든 일련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거나 관련되는 행위, 오류 또는 부작위를 포함합니다.

A.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결함, 부족, 부적합 또는 위험한 상태
B.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가 계약 조건대로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 또는
C.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관할권 내에서 **귀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 또는 유사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또는
D.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E.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저질러진 다른 민사상의 책임 행위

기술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가 **계약상 배상 책임**(Contract Indemnity)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책임 또는
B. **귀하**가 **계약적으로 인수된 사고 대응 비용**을 떠맡고 있는 **제 3 자**의 책임

4.87 **지역제한(Territorial Limits)**이란 **보험증권명세** 제 5 항에 명시된 지역제한을 의미합니다.

4.88 **제 3 자**란 본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자연인, 단체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4.89 **영업 비밀**(Trade Secret)이란 그 비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 그것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부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도출되는 공식, 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4.90 **경영권변경(Transaction)**이란 **보험증권명세** 제 1 항에 표시된 **기명피보험자**의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든 자산이 다른 실체에 의해 취득되는 것.
B.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실체와 합병되는 것.
C. 개인, 실체 또는 연계된 개인들 집단 및/또는 실체가 이사회이사의 50% 이상을 선출, 임명 또는 지명할 권리 또는 권한을 얻는 것.
D. 개인, 실체 또는 연계된 개인들 집단 및/또는 실체가 불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것. 또는

E. 파산관재인, 관리인, 청산인, 공식적 관리인 또는 수탁자가재산을 관리, 청산, 감독 또는 달리 통제하도록 임명되는 것.

4.91 **권한없는사용 또는 접근(Unauthorised Use or Access)**이란 **피고용인**을 포함해 권한이 없는 당사자 또는 개인이 **보험적용 대상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접근하는 것 또는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권한을 초과해 **보험적용대상 컴퓨터시스템**에 들어가거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92 **차량(Vehicle)**이란 바퀴 또는 자체 부설 트랙으로 이동하고 수동 또는 동물력 이외의 추진력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유형의 기계(트레일러, 트레일러에 부착된 기계류 또는 장치 포함)를 의미합니다.

4.93 **판매자**란 일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귀하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 3 자**를 의미합니다.

판매자에는 다음 **제 3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귀하**가 **귀하의 제품**을 취득한 **제 3 자** 또는

B. **귀하**가 **귀하의 제품**에 들어가거나 **귀하의 제품**에 딸려 있거나 **귀하의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재, 용기, 성분 또는 부품을 취득한 **제 3 자**

4.94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란 **기업휴지 사고** 후에 **보험증권명세**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4.95 **전쟁(War)**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다음에 의한 평시 또는 전시의 적대행위 또는 군사 행동(실제, 임박한 또는 예상되는 공격을 통제, 방지, 억제하는 행동 또는 통제, 방지, 억제하지 못하는 것 포함)
 i. 정부 당국 또는 통치권(법률상 또는 사실상) 또는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을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당국
 ii. 육군, 해군 또는 공군 또는
 iii. 관권의 시행자

B. 반란, 혁명, 내전, 정권 찬탈 또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부 또는 통치권(법률상 또는 사실상)을 전복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의 활동 또는 정부기관 또는 통치권 (법률상 또는 사실상)이 그러한 행위를 통제, 예방 또는 억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또는

C. 평시든 전시든 핵융합, 원자 핵융합, 방사능 또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전쟁의 무기

4.96 **선박(Watercraft)**이란 물위 또는 물속에 떠 있거나 물에서 이동하거나 물속에서 이동하도록 만들어지거나 의도된 모든 배 또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4.97 **당사(We)**는 **보험자**를 의미합니다.

4.98 **귀하(You)**는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제 5 조 면책사항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면책 사항이 본 **보험약관**의 모든 조항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하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1 조정, 수리, 교체 및 철회 비용

다음의 조정, 처리, 검사, 회수, 제거, 수리, 교체 또는 철회를 위해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에게 발생된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 사이버 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에 관련되는 손실.

A.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 또는
B.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물품 또는
C. **귀하의 서비스**가 수행되거나 수행되었던 물품 또는
D. 콘텐츠, 정보 또는 자료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확장담보 1-E, 확장담보 1-F 또는 보험계약 제 2.3 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 광고 또는 허위진술

미디어 콘텐츠에 설명되어 있거나 표시된 실제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되거나 기인한 것으로 주장되는 보험계약 제 1.3 조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5.3 항공기 및 항공기제품

다음에서 근거하거나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3 조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항공기**의 소유, 운영 또는 운항 또는
B. **항공기**의 안전, 추진, 운항 또는 비행 기능과 연결된 **항공기**에 대한 **귀하**의 지식과 결부된 **귀하의 제품**

5.4 지불금액 또는 배상

배상 또는 환불을 포함하여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와 관련해 **귀하**가 소유하거나 **귀하**에게 지불되거나 **귀하**가 청구한 수수료, 비용 또는 대가에서 근거하거나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확장담보 1 - C 에 따라 보장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확장담보 1 - G 에 따라 보장되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5 석면, 실리카 및 혼합 분진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석면, 실리카** 또는 **혼합 분진**의 실제로 발생했거나 주장되거나 위협이 되는 오염, 병원성, 독성 또는 기타 위험한특성
B. **석면, 실리카** 또는 **혼합 분진**의 영향을 모니터링, 정화, 제거, 봉쇄, 처리, 해독 또는 중화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시험해야 한다는 요구, 명령, 요청 또는 규제적 또는 법적 요구사항, 또는
C. **석면, 실리카** 또는 **혼합 분진**의 영향을 모니터링, 정화, 제거, 봉쇄, 처리, 해독 또는 중화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시험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손실, 비용에 대해규제기관, 법정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나 이들을 대신하여 실시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적 절차

5.6 행위

다음과 관련되는 **귀하**의 행위 또는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야기되거나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또는 어떤식으로든 관련되는 제 1 조 - 기술배상책임 및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알면서나 고의로 의무로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허용하는 것.
B. 범죄, 고의적인 사기 또는 고의적인 부정직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르거나 허용하는 것.
C. **귀하**에게 자격이 없는 개인적 이익, 비밀 이익 또는 이득을 실제로 획득하거나 획득하려고 시도한 것.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그러한 행위가 최종 판결(항소가 소진된 후) 또는 서면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 **피보험자**가 저지른 행위는 다른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지배그룹**의 일원을 알고 저지른 행위는 관련 **피보험 조직**에 전가됩니다.

5.7 계속되는 행위

당사에 의해 발행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에 적용되었을 본 **보험약관**의 비갱신 또는 취소 또는 본 **보험약관**의 후속 갱신 또는 교체 후, 그러한 행위의 계속 또는 재개에서 근거하거나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제 1 조 - 기술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5.8 사이버 배상책임

다음에 대한 **컴퓨터 악성 행위** 또는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련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보험적용대상 컴퓨터 시스템** 또는
B.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판매, 공급, 변경, 제작, 수리, 서비스, 설계, 테스트, 설치 또는 처리된
컴퓨터시스템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확장담보 3-G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9 귀하의 보호,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귀하가 소유하고 있거나 **귀하**의 보호,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재물손해**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확장담보 3-C 에 따라 보장되는 **재물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10 귀하의 제품에 대한 손해

다음에 대한 **재물손해**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그러한 손해가 결함이나 유해한 성질 또는 부적합성에 기인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의 부분. 그러나 본 A 항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된 부정확한 **서비스**에 의해서나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해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입증된 재료 또는 장비로 인해 수리, 재조정 또는 교체 되어야하는 물품의 부분. 그러나 본 B 항은 그러한 작업으로 인한 **재물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11 데이터위험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5.12 차별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1 조 - 기술배상책임 및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모든 종류의 차별, 또는
B. 그러한 차별을 바탕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그것과 관련되는 모욕, 괴롭힘 또는 위법행위

5.13 피고용인 혜택

피고용인에게 연금, 이익배분, 의료 및 복지 또는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립되거나 유지되는 급부제도 또는 신탁과 관련한의무가 맡겨진 수탁자, 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지는 책임, 의무 또는 임무의 실제 발생했거나 주장되는 위반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5.14 고용주 배상책임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해당 보험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 보상과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또는 그에 의해 요구되는 기금, 제도, 보험 또는 자가보험에 따라 **귀하**가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에 관한 배상책임
B. 산업상 지급판정 또는 합의 또는 결정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산업상 지급 판정 또는 합의 또는 결정
C. 다음을 포함해, 개인의 **귀하**와 실제 또는 가망 고용관계와 관련해 고용법 또는 기타법률 조항의 실제 발생했거나 주장되는 위반
 i. 본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제 1.2 조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고용 관련 **개인정보** 침해 또는
 ii. 본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제 1.2 조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고용 관련 정신적 고통 가해행위

5.15 불가항력

화재, 연기, 폭발, 번개, 바람,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산사태, 우박, 천재지변 또는 어떤 원인이든 기타 물리적인 사고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보험계약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2 조 - 사이버 위험 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5.16 인프라 중단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또는 기타 인프라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고장이나 중단, 전기적장애, 서지, 스파이크, 전압저하, 정전 또는 정지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보험계약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2 조 - 사이버 위험 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컴퓨터 악성 행위**, **권한없는 사용 또는 접근** 또는 **정보통신 보안**의 실패의 결과로 발생한 **귀하**의 운영통제하의 전화, 케이블 또는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프라의 고장, 중단, 방해 또는 정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17 금지명령 준수 비용

금지명령, 특정이행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를 준수하기 위해 **귀하**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보장되는 **소비자보상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18 피보험자 대 피보험자

다음 행위로 인해 발생된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또는 **귀하**가 합작사업을 하는 실체를 포함해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다른 자연인 또는 실체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유지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제 1.2 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B 와 C 에 기술된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를 **귀하**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가 **귀하**에 제기한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19 의도적인 부당한 수집 또는 사용

귀하의 **개인정보**의 승인받지 못하거나 은밀하거나 부당한 사용 또는 수집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통지하지 못한 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로 인해 초래되거나 그 결과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개인정보**의 의도하지 않은 부당한 사용 또는 수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귀하**의 비의도적인 **개인정보 규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0 라이센싱 및 규제조치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귀하**의 다음에 대한 실제 또는 위협하는 결정
귀하가 시행하거나 유지하거나 입수하거나 획득할 의무가 있는 채권, 보험, 임대, 면허, 명령, 허가
또는 다른 계약을 언제라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i. 시행하거나 유지하거나 입수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
ii. 취소하거나 소멸되게 하거나 수정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철회하거나 일시중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손상시키겠다.

B.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기관 또는 정부규제당국 또는 기타면허 또는 권리부여기관이 규제, 준규제 또는 공식적인 자격, 기능 또는 의무로 제기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대신해 제기된 조치.
그러나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과 관련해서만 위의 B 항은 다음에서 기인하는 손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규제적소송절차**
ii.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고객으로서의 자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iii. 정부기관이 **귀하**가 저지른 **기술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해 **귀하**의 고객에 대해 제기한 소송
iv. **진술비용**

5.21 재물의 사용손실

다음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사용의 손실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계약과 관련해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이행의 지연** 또는 부족, 또는
B. **귀하**에 의해 제조되고 수행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제조되고 수행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귀하**가 보증하거나 진술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귀하** 외의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된 후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물리적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한 다른 유형자산의 사용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2 화폐

귀하에게 법적의무가 있는 화폐의 손실 또는 가치 감소를 포함하여 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소실, 도난 또는 손실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5.23 핵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 인한 핵 폐기물로부터의 방사능에 의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오염, 또는

B. 폭발성 핵연료 집합체 또는 핵구성요소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한 특성.5.24 특허 및 영업비밀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제기된 특허 또는 **영업 비밀**의 유효성, 무효, 침해, 위반 또는 부당이용에 대한 주장, 분쟁 또는 문제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확장담보 1-A 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적으로 인수된 특허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4 특허 및 영업비밀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유효성, 무효성, 침해, 위반 또는 도용과 관련된 청구, 분쟁 또는 문제를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경우.
단, 본 제외 조항은 확장 조항 1-A 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상 인수된 특허 면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5 개인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개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1 조 - 기술배상책임 및 제 2 조 - 사이버 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또는 **미디어 행위**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상해, 정신적 고통, 정신적 긴장, 정서적 고통, 고통 또는 충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6 사전 인지된 사실 및 계류중이거나 이전의 절차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귀하**에 대해 제기 또는 개시되고 본 **보험약관**의 효력 발생일 또는 **당사**가 발행한 본 **보험약관**의 연속 갱신 또는 대체인 **보험약관**의 효력발생일 중 더 빠른 날짜 또는 그 전에 **귀하**가 통지를 받은 이전 또는 계류 중인 소송, **기술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미디어 행위**, 요구, 중재, 관리 또는 규제적 소송절차 또는 조사, 또는 그 기저에 있거나 거기에 대해 주장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 및 상황을 주장하거나 거기서 유래되는 것.

B. 본 **보험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다른 **보험약관**에 따라 제공된 통지의 대상이었던 행위 및 상황, 또는

C. 본 **보험약관**의 효력 발생일 또는 **당사**가 발행한 본 **보험약관**의 연속 갱신 또는 대체인 **보험약관**의 효력발생일 중 더 빠른 날짜 또는 그 전에 **지배그룹**의 일원이 해당 행위가 손실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면 **보험기간**의 개시전에 실제로 행해졌거나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행위

5.27 오염

오염물질의 실제 발생했거나 주장되거나 위협되는 배출, 방출, 누출, 이동 또는 처리 또는 **귀하**가 오염물질을 모니터링, 정화, 제거, 봉쇄, 처리, 해독 또는 중화하기 위해 시험해야 한다는 지시, 공식적인 명령 또는 요청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자발적인 결정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에 따라서만 위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오염물질**의 배출, 분산, 방출 또는 누출로 인해 발생하고 그러한 일이 전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는 다음 경우, 과거의 실제로 발생했거나 주장되거나 위협된 **오염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이동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미국 또는 캐나다, 또는 그 영토나 그들의 통치를 받는 국가에서 발생할 때 또는

B.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미국 또는 캐나다, 또는 그 영토나 그들의 통치를 받는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5.28 제품 보증

피보험자가 제공한 제품 보증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다음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제품**의 목적적합성 또는 품질 또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적으로 묵시적인 조건 또는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
B. 해당 보증이 없을 때 발생했을 수 있는 손실

5.29 제품 회수

귀하에 의해 또는 **귀하**를 위해 완료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철회, 회수, 검사, 수리, 조정, 제거, 교체 또는 사용 손실 및/또는 해당 **제품**이 일부를 이루는 재물의 철회 또는 회수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확장담보 3-A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30 제품 회수 제한

직간접적으로 다음에서 야기되거나 발생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는 **제품 회수 비용**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확장담보 3-A 에 따른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배치(batch), 코드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제품**, 동일한 상표 또는 브랜드명이지만 본 **보험약관**으로 보장되는 **제품**과는 다른 배치, 코드 또는 다른 식별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제품**.
B. **제품** 또는 포장의 고유한 열화, 분해, 부패, 변화 또는 변형
C. 고객의 승인 또는 신뢰의 손실 또는 고객의 승인을 회복하기위해 발생한비용 또는 기타 결과적인 손실
D. 본 **보험약관**의 개시 전 본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제품**의 기존 상태에 대한 **지배그룹**의지식
E.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된 “소비기한” 또는 “최상품질기한”과 관련해 **제품** 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잘못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
F. 정부기관 또는 다른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금지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된 재료에 대한 **귀하**의 계속적인 사용
G. **회수 사고** 이전에 **지배그룹**이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인 문의를 통해 발견했어야 했던 **귀하**의 오류나 부작위
H. 유전물질이 **제품** 또는 **제품** 내성분의 유전자기술을 통해 변형된 생물체의 변형
I. 본 **보험약관**의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제조, 판매, 취급 또는 유통된 모든 **제품**

5.31 거래 또는 불공정 사업의 제한

독과점 또는 반 경쟁적 행위, 지배적지위의 남용, 카르텔 또는 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또는 규정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위반이나 주장되는 위반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그러나 보험계약 제 1.2 조에 관해서만, 본 면책조항은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규정** 위반에서 기인하는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32 유가증권법

채권 또는 소유권의 증서 또는 기타 증거의
i. 발행
ii. 등록
iii. 거래 또는
iv. 상장 또는 등록 유지와 관련해

다음을 위해 고안된 법률 또는 규정의 실제로 발생했거나 주장되는 위반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사기, 불공정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의 방지 또는 금지, 또는
B. 정기적인 완전한 정보 공개

5.33 승계인 배상책임

해당 **기술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미디어 행위**, **사고** 또는 **회수**의 변경, 계속 또는 재개를 포함하여 그러한 취득이 실행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한 **기술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미디어 행위**, **사고** 또는 **회수**에 대해

A. **귀하**가 취득한 자산의 소유, 유지관리 또는 사용 또는
B. **귀하**가 그 자산, 사업 또는 조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조직의 행위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5.34 거래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보험계약 제 1.2 조 및 제 1.3 조 및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유가증권 또는 모든 종류의 금융 자산을 거래, 투자, 매각, 매입 또는 판매할 수 없음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그러나 보험계약 제 2.2 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휴지 손실**에 관해서만 본 면책조항은 **귀하**의 수수료 수입 손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자산 가치의 변동
C.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계좌의 재무가치, 또는
D. 자산에 대한 이자나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없음

5.35 부당이득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A. 부당이득 금액
B. **귀하**가 지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지는 의무의 이행 비용
C. **당사**가 서명한 배상책임의 청산 또는 면제 계약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발생되거나 합의된 손해, 손해배상예정금, 손실 및 비용
D. **귀하**가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는 금액
E. 비용 보증 또는
F. 본 **보험약관**이 구성된 법률에 따라 보험을 들 수 없는 사항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본 **보험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상 배상 책임에서 피배상자의 방어 비용에 대한 의무를 해당 **피보험 조직**에서 지는 경우, **피보험 조직**의 피배상자를 방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비용**인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 비용
ii. 본면책조항의 상기 C 항은 확장담보 1-B 에 따라 보장되는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36 요청되지 않은 통신

스팸방지 법률 또는 사람 또는 실체의 은둔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 규칙, 규정 또는 관습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여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통신 방법의 요청되지 않은 전자적인 배포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그러나 보험계약 제 1.2 조에 관해서만, 본 면책조항은 해당 정의의 C 항에 정의되어 있는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행위**에서 기인하는 **손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37 차량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통제하는 차량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차량, 또는
B. 법에 따라 보험을 들어야 하는 차량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주차장 운영자로서의 수입이나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 (**귀하**가 소유, 사용하거나 **귀하**를 대신해 소유, 사용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
ii. **개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차로 또는 간선도로의 경계 밖에서 발생하고 해당되는 법률에서 그러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을 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차량에 물품을 수거 또는 배달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차량의 적재 또는 하역 중 발생하는 **개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iii. 차량의 일부를 이루거나 부속되어 있거나 **차량**과 관련해 사용되는 도구, 시설, 장비의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해당되는 법률에서 그러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을 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개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5.38 전쟁과 테러

전쟁, 침략, 외국의적의 행동, 테러행위, 적대행위, 군사작전(선전포고여부 불문), 파업, 폐쇄, 폭동, 내전, 반란, 혁명, 민란, 봉기 · 병권 또는 정권 찬탈의 규모를 띠거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민요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손실**을 초래하는 **사이버 테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39 선박

물위나 물속에서 길이가 15 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소유, 운영 또는 운항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귀하**가 소유하지 않거나 **귀하**가 운영하지만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40 마모 및 정부기관

다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보험계약제 2.1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에 따른 담보와 관련되는 손실.

A. 데이터 처리 매체를 포함하는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의 일상적 마모 또는 점진적인 열화, 또는
B. **보험 적용 대상 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의 압류, 몰수 또는 파괴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

제 6 조 보상한도액

6.1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에 적용

A.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험한도**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할 최대 금액입니다.

B.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최고 **보상한도**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단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할 최대 금액(**손실** 포함)입니다.

C. **소비자보상기금**, **지불 카드 손실** 및 **규제 범칙금**에 대해 **보험증권 명세**에 표시된 **보험한도는** **보험기간**에 대해 **소비자보상기금**, **지불카드 손실** 및 **규제 범칙금** 각각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할 최대 총 금액입니다. 이러한 **보험한도**는 또한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해당 **보상한도**의 일부이지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D.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보험계약 제 1.1 조에 따라 규정된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의 일부이지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보상한도**를 감소시킵니다.

E. 모든 보험계약과 제 1 조 확장담보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은 **제 1 조 및 제 2 조 총한도**의 적용을 받는 **제 1 조 총한도**에 대한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해당 **보상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2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적용

A.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할 최대 금액입니다.

B.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최고 **보상한도**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단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할 최대 금액(**손실** 포함)입니다.

C. 모든 보험계약과 제 2 조 - 사이버 위험관리의 확장담보에 대해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제 1 조 및 제 2 조 총한도**의 적용을 받는 해당하는 **제 2 조 총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6.3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에 적용

A. 영업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보험계약과 열거된 각 확장담보에 대해 각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당사**가 지불할 최대 금액입니다.

B.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보험 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따라 **제품 결함**을 초래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당사**가 지불할 최대 총액입니다.

C. 확장담보 사이버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보험 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따라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당사**가 지불할 최대 총액이며 보험계약 제 3.1 조에 따라 규정된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의 일부이지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보상한도**를 감소시킵니다.

D. 미국, 캐나다 또는 그들 각각의 보호국 및 영토내의 법원 또는 다른 법인 단체에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포함해 어떤 **사고**에 관해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해당 **보상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 **손해배상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한 **당사**의 배상책임은 본 **보험약관**에 따라 **당사**가 그 손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총액이 그 지불금에 대해 부담하는 비율로 제한됩니다.

6.4 기타 조항

A.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상한도**는 각 보험계약과 각 확장담보에 관한 별도의 **보상한도**입니다.

B.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제 1 조 및 제 2 조 총한도는 당사**가 **보험 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따라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모든 **손실** 포함)에 대해 지불할 최대 총액입니다.

C.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에 관해서만 **당사**가 각 **단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손실** 포함)은 어느 조항이든 해당되는 조항에 따른 최고 보험계약 **보상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D.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에 관해서만 **당사**가 지불하는 금액은 **보험기간**에 관해 다른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보상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 확장담보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각 **보상한도**는 **보험 기간**과 관련하여 그러한 각 확장담보에 대해 본 **보험약관**에 따라 **당사**가 지불하는 최대 총액입니다.

F. 제 8.19 조 또는 제 8.22 조가 작동 중일때는 **보상한도**가 증가하거나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보장은 **보험 기간**과 관련하여 해당 **보상한도**의 일부이지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7 조 자기부담금

7.1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적용

A.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자기부담금**이 각 행위에 적용됩니다.

B. **단일 손해배상청구**마다 하나의 **자기부담금**만 적용됩니다.

C. **단일 손해배상청구**에 여러 **자기부담금**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 및 **비용**의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기부담금**의 합은 적용 가능한 최대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D. 보험계약 제 2.2 조에 대해서만 **당사**는 다음 **기업휴지 손실**을 지불합니다.

i. 해당 **대기 기간**이 만료되었고,

ii.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기업휴지손실**.

7.2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에 적용

A.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자기부담금이** 각 **사고**에 적용됩니다.

B.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해당 **자기부담금이** 각 **회수**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C. **회수** 기반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목적으로 **귀하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종의 상품 또는 제품으로 동일한 유해한조건에 있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하나의 **회수**의일부로 간주됩니다.

D. 각 **회수**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순손실**로 제한됩니다.

7.3 모든 조항에 적용

A. **당사**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실**과 다른 보장되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귀하**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 의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해당 **자기부담금** 은 해당 보험계약 또는 확장담보에 대해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험한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C. 보장되는 손실이 여러 **자기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기부담금**은 보장되는 손실의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기부담금**의 합은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한 최대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D.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 **당사**에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제 8 조 일반조건

8.1 신규자회사의 인수 및 설립

본 **보험약관**에 따른 **자회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 기간** 동안 **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A. **피보험 조직**의 최신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자회사**가 **피보험 조직의** 총매출액을 20%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
B. 신규 **자회사**가 캐나다 또는 미국 또는 그 영토 밖에 주소를 두고 있다.
C. 신규 **자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투자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D. 신규 **자회사의** 사업 활동이 본질적으로 **피보험 조직**의 사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기 8.1 A.-D 조건밖의 신규 **자회사**의 경우, 보장은 인수, 합병 또는 설립일로부터 90 동안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본 자동 보장은 **당사**가 본 **보험약관**에 적용하고 보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당사**의 서면계약으로 90 일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자회사**와 관련하여, 담보는 신규 **자회사**의 인수, 합병 또는 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 또는 행해진 것으로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해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됩니다.

8.2 조정

보험료의 일부가 추정치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각 **보험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당사**가 요구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최소 보험료에 따라 조정됩니다.

8.3 배분

A. **손해배상청구**가 본 **보험약관**에서 보장되는 사항과 보장되지 않는 사항 모두와 관련되는 경우, **당사**와 **기명피보험자**는 본 **보험약관**에서 보장되는 사항과 보장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상대적인 법적 및 재정적 노출에 근거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발생하거나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해 발생한 금액을 배분합니다.
B. **당사**와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발생하거나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해 발생한 금액의 배분에 동의할 수 없으면,
 i. **당사**는 **당사**와 **기명피보험자** 간에 다른 최종 배분이 상호 합의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중재되거나 사법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본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당사**가 간주하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의 일부를 선지불합니다
 ii.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당사**는 **당사**와 **기명피보험자** 간에 다른 최종 배분이 상호 합의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중재되거나 사법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본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당사**가 간주하는 금액(**손해배상청구 비용** 이외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iii. **당사**와 **기명피보험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는** 중재에 의한 결정을 위한 금액의 배분에 관해 **당사**와 **기명피보험자** 간의 의견 불일치를 제출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 위원회는 **기명피보험자**가 선택한 1 인의 중재인, **당사**에서 선택한 1 인의 중재인, 그리고 이 두 중재인이 선택한 제 3 의 독립적인 1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중재의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iv. **손해**, **손해배상청구 비용** 또는 **당사**와 **기명피보험자** 간에 상호 합의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중재되거나 사법적으로 결정되는 다른 금액의 배분은 경우에 따라 그 반대되는 사전지불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액에 소급 적용됩니다.
 v. **손해배상 청구비용의 배분** 또는 **선지급은 손해배상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비용**금액이외의 금액의 배분에 적용되거나 그에 대한 추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8.4 변경

기명피보험자는 보장되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 변화에 대해 **당사**에 통지해야 하며 **당사**가 그러한 변경된 위험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락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때까지 **당사**는 그러한 변경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8.5 양도

본 **보험약관** 및 본 **보험약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없습니다.

8.6 승인 조항

기명피보험자는 본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하기로 동의합니다.

8.7 기업휴지 손실의 계산

당사의 손실 조정 시 발생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의 모든 중요한 변경을 포함하여 **기업휴지 사고** 직전 12 개월 동안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휴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을 동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본 계산에는 정의 4.28, D. ii 에 규정된 포렌식 회계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조정에는 유리한사업조건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증가로 인해 벌었을 것 같은 소득 증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8 해지

첫 번째 **기명피보험자**는 **당사**에 요청서를 보내거나 보험증권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 해지가 발효되는 시점을 명시하여 언제라도 본 보험 또는 본 보험의 개별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지일 60 일 전(보험료 미납부의 경우는 10 일 전)에 첫 번째 **기명피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보험 또는 본 보험의 개별 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해지 통지는 첫 번째 **기명피보험자**의 최종 주소로 우송되며 담보가 해지되는 날짜가 표시됩니다. 해지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물 발송증명으로 충분한 통지 증거가 됩니다.
경과보험료는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미경과보험료는 가능한 한 빨리 반환됩니다.

8.9 절차 수행

A.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 및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i. **손해배상청구**가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사기인 경우에도 **당사**가 **귀하**에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부분에 대해 **귀하**를 방어할 의무
 ii. **당사**가 편법으로 간주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조사하고, 방어하거나 해결할 권리

 그러나 위의 A.i 항 및 ii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본 **보험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손실**의 부분 또는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또는 합의를 실행하거나 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B. **보험한도액**이 소진된 후에는 **당사**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지불하거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방어할 의무가 없습니다.
C. **귀하**는 본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당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D. **귀하**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보류되지 않아야 함) 어떠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기로 해서는 안 되며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및 해결에 앞서 **당사**에 상의해야 합니다.
E. **귀하**는 **귀하**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와 **당사**가 임명한 조사관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실제 또는 가능한 **손실**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당사**가 본 **보험약관**하에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포함), 방어, 합의, 회피 또는 감액 행위에 있어 그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전적인 협조 및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F. **귀하**는 **당사**가 개인, 법인 또는 조직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당사**에 협조하고 본 **보험약관**의 조건을 준수하며 필요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G.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해,

i. **사고**의 경우 또는 합리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귀하**는 **개인신체상해**, **재물손해** 및 기타 **손실**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귀하** 자신의 비용으로 취해야 합니다.

ii. **귀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또는 방어 또는 대위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제품**, 기구, 시설 및 기타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당사**가 검사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당사**의 동의 없이 변경이나 수리가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8.10 비밀유지

귀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 조직**의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제 1 조 총한도, 제 2 조 총한도**, **제 1 조 및 제 2 조 총한도** 또는 본**보험약관**에따라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조건 또는 성격을 **제 3 자**에게공개해서는 안됩니다.

A. **당사**가 **당사**의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B. 확장담보 3-B, 보험 증명서에 의해 **귀하**가 고객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제 3 자** 또는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는
C. 공개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8.11 담보지역

규정과 법률(이 목적에서는 일방에게 적용되는 무역 또는 경제 제재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허용되는 한, 본 **보험약관**의 조건에 따라 본 **보험**은 **담보지역** 어디에서나 행해진 **행위** 및 발생된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합니다.

8.12 손해배상청구의 방어 및 합의에 관한 분쟁

A. 본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합의되어야 하는지 또는 판결이나 결정에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하**와 **당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가 합의되어야 하는 금액 또는 판결이나 결정에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해 줄 선임 법률고문(상호 합의로 결정 또는 합의가 없을 때는 **귀하**가 **당사**가 지명한 세 명의 선임 법률고문 중 한 명을 선택)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제공하고 합의에 관한 권고를 할 때, 선임법률고문은 법적 및 상업적인 고려사항을 모두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임 법률고문은 **손해배상청구**를 다투는 데 있어 회수될 수 있는 손해 및 비용과 발생할 수 있는 방어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성공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임 법률고문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다툴 것을 권고하지 않는 한 **귀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B. 본 권고를 얻는 비용은 **당사**에 의해 **비용** 또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의 일부로 처리될 것입니다.
C. 선임 법률고문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권고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부당하게 보류 또는 지연되어서는 안 됨)를 받아 **당사**는 선임 법률고문의 권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선임법률고문의 권고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지만 실패한 경우, **당사**는 본 **보험약관**의 조건, 면책사항 및 제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을 계속합니다.
D. 본 조항의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손해배상청구**의 방어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당사**는 또한 A 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선임 법률고문의 의견을 수령한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합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인 **피보험자**와 상의할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선임 법률고문의 권고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당사**의 배상책임은 선임 법률고문이 권고한 합의 금액에 권고일까지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합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선임 법률고문의 합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사**가 **당사**의 절대 재량으로 **손해배상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당사**는 계속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E. 본 조건하의 모든 선택은 가능한 한 빨리 **당사**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선임법률고문의 권고를 수령한 후 14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8.13 준거법 및 관할권

본 **보험약관**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 됩니다. 본 **보험약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법원은 본 **보험약관**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8.14 비전가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당사자로 구성되는 경우, 한 당사자가 고지의무 또는 본 **보험약관**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A. 나머지 당사자는 전적으로 결백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으며,
B. 관련사실 또는 행위를 알게 된 때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당사**에 그 당사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그러나 법인기업, 파트너십, 합작회사 또는 비법인단체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피보험자**의 **지배그룹** 일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해당 **피보험자**에게 전가됩니다.

8.15 비갱신 보고연장기간

A. 만료 시, 본 **보험약관**에 의거한 보험계약이 갱신되지도 않고 보험자의 해당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대체되지도 않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i. 추가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60 일의 **보고연장기간**
 ii. **기명피보험자**는 **당사**가 합의한 추가 보험료 지불을 **당사**에 신청하고 **당사**는 본 **보험약관**에 따른 담보를 **보험 기간** 만료일로부터 자동 60 일의 기간보다 긴 보고연장기간 동안 연장할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B. 본 조항하의 확장담보는 제 1 조 - 기술배상책임의 보험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전에 완전히 행해지고 **보고연장기간**의 만료 전에 **당사**에 통지된 모든 해당 확장담보, **기술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또는 **미디어 행위**에 적용됩니다
C. 본 조항하의 본 **보고연장기간**을 행사하려면 **기명피보험자**는 **보험 기간**의 만료 후 60 일 이내에 다음을 해야 합니다.
 i. 더 긴 **보고연장기간**을 구매하기 위해 **당사**에 서면 요청을 제공해야 하고,
 ii. 더 긴 **보고연장기간**의 개시시에 완전히 경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D. **기명피보험자**는 **경영권의 변경** 발생 시 본 조항하의 **보고연장기간**을 구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E. 본 **보험약관**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추가 보험료는 지불 시 완전히 경과된 보험료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F. **기명피보험자**는 **당사**가 본 **보험약관**과 다른 갱신 조건, 조건, 배상책임 또는 보험료의 한도를 제시하는 것이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G. **기명피보험자**가 유사한 보험 보장을 받는 경우 및 그 날짜부터 **보고연장기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미 구매한 **보고연장기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보험료는 **보고연장기간** 개시 시 완전히 경과된 보험료가 됩니다.

8.16 통지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통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귀하**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i. **손해배상청구**, **사고** 또는 **행위**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또는
 ii. 본 **보험**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는,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위**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경우에도 **보험 기간의 만료 후 60 일** 또는 해당 **보고연장기간** 이내에.
B. 본 **보험약관**에 따른 모든 통지는 우편 또는 다음 이메일 주소를 통해 **당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C. **귀하**는 본 **보험약관**에 따라 담보가 제공되는 **제품**이 **회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또는 정부기관의 통지를 받은 즉시 **당사**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D. **귀하**는 가능한 한 빨리 **귀하**가 수령한 모든 사전조치서, 요구서, 통지서, 소환장, 배상청구서 또는 기타 절차를 **당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E. **귀하**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고** 또는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타결 지어서는 안 됩니다.

F. **귀하** 및 기타 관련 **피보험자**는 **당사**의 요청 시 **당사**에 협조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을 해야 합니다.

i. 협의 타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ii. 보험이 제공되는 부상 또는 손해 때문에 **귀하**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개인이 나 조직에 대해 구상권을 시행하는 절차의 수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iii. 청문 및 재판에 참석하고 증거를 확보 및 제공하고 증인의 출석을 얻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G. 통지에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본 **보험약관**에 따른 모든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주장되는 **손해배상청구**, **행위**, **사고**,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b)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세부사항

c) **제 3 자**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사본 또는 **규제적 소송절차**와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

d) 주장되는 **손실**의 모든 세부사항

e) **당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ii. **기업휴지 손실**에 대해 **귀하**가 **당사**에 배상을 요청하는 데는 손실 계산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손실계산서에는 손실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와 어떤 가정을 했는지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보고서, 회계 장부, 청구서, 원장, 송장, 기타 전표 및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의 사본을 포함한 모든 문서 증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H. **보험 기간** 또는 **보고연장기간** 중에, **귀하**가

i.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한 상황을 당사에 서면 통지하거나

ii. **보험 기간**의 만료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행위**에 대해 **귀하**에 대한 민사소송의 시효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시효의 만료를 향해가는 시간을 중단해줄 것에 대한 서면 요청을 받고 그러한 요청과 그러한 **사고**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에 서면 통지한 경우,

그러한 **상황** 또는 그러한 요청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보험 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17 기타 보험

A. **손실**이 **귀하**에 의해 또는 **귀하**를 대신해 체결된 기타 보험 또는 **귀하**가 이전이나 현재 수익자인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까지 본 **보험약관**은 그 제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그러한 기타 보험의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만 보장합니다.

B. 위의 A 항은 **보험증권명세**에 표시된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초과보험으로 특별히 기술되어 있는 기타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18 보험약관의 구성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보험약관**에서

A. 단수에는 복수가 포함되고 복수에는 단수가 포함됩니다.

B. 표제는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해석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C. 권리, 법적 지위, 법적 개념 또는 구조 또는 법규는 다른 관할권의 동등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D. 법령 또는 법조항에는 모든 개정 버전 또는 재제정이 포함됩니다.

E. 본 **보험약관**에 굵게 표시된 단어는 제 4 조 - 정의 및 **보험증권명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8.19 진술

본 **보험약관**을 **기명피보험자**에 발행함에 있어 **당사**는 신청서 또는 제안서에 제공된 진술 및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귀하**는 각 신청서에 본 **보험약관**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당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귀하**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8.20 피보험자의분리

보험한도, 제 8.8 조 및 본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에 구체적으로 지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고, 담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각 **피보험자**가 유일한 **피보험자**인 것처럼 및
B.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각 **피보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8.21 분리가능성 및 회피불가

A. 본 **보험약관**의 개시 전 또는 개시와 관련하여 위험의 공정한제시 의무의 위반이 부정직하다는 것을 **당사**가 입증하지 않는 한 **귀하**의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당사**에 없습니다.
B. 제안은 **귀하**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제안으로 해석되며 신청서 또는 제안서에 제공된 진술 및 세부사항과 관련해 어떤 **피보험자**가 한 진술 또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피보험자**에게 전가시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보험 적용이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C.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지배그룹** 일원이 한 진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만 그러한 **피보험조직**에 전가될 것입니다.

8.22 대위

A. 본 보험 계약하에 **당사**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는 그 지불과 관련하여 **귀하**의 구상권 또는 복구권을 대위 할 것입니다.
B. **귀하**는 **귀하**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당사**에 모든 합리적인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C. 제 2 조 - 사이버위험관리에 따른 담보와 관련해서만,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구상 또는 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D.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 및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에 따른 담보와 관련해서만, **당사는** 본 **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손실**에 대해 그러한 **손실**이 있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귀하**가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복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사**가 그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해 가졌을 복구권을 포기할 것입니다.

8.23 무역 및 경제제재조항

담보의 제공, 손실에 대한 지불 또는 보험 혜택의 제공이 **당사** 또는 **당사**의 모회사 또는 최종적인 지주회사를 UN 결의에 따라 시행되는 제재, 금지 또는 제한 또는 EU, 영국, 호주연방 또는 미국의 무역 및 경제 제재, 법률
또는 규정에 노출시키는 한 **당사**는 본 **보험약관**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본 **보험약관**에 따른 손실에 대해 지불하거나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8.24 경영권의 변경

보험기간 중에 **경영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는 경영권의 변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경영권의 변경**이 없었다면 본 보험에 따라 담보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행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경영권의 변경 후 45 일까지는 **당사**에 **보험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84 개월까지 **보고연장기간**에 대한 제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고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수령한 후, **당사**는 본 **보험약관**에 따른 담보를 **당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로 최대 84 개월의 **보고연장기간** 동안 연장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추가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25 가치평가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가치 평가가 적용됩니다.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이 암호화폐를 포함해 본 보험약관이 발행된 국가의 현지 통화 또는 호주 달러 외의 통화로 지불되는 경우, 본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하려면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짜에 그 다른 화폐를 본 보험약관이 발행된 국가의 현지통화 또는 호주달러로 환산한해 당 환율 계산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보험약관**에 따라 **당사**가 **귀하**에 하는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의 상환은 귀하**가 제공한 증거 제출에 기초하여 본 **보험약관**이 발행된 국가의 현지 통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증거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부풀린 환율에 기초한 경우, **당사**는 **사이버 갈취 손해배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계산을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 9 조 특별조건

9.1 해외법인손실

여기 포함되는 내용과는 상충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A. **현지 증권**이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나 **해외 법인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증권이 유효하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현지 증권**이 발급되었으나, 어떤 사유로 **해외 법인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 ("DIC 담보"); 또는
C. **현지 증권**이 발급되었으나 **해외 법인 손실**의 일부보상에 의해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DIL 담보"):

당사는 **보상하는 손실**에 대해 **최초 기명 피보험자**에게 결정적으로 동의 된 다음의 금액과 동등한 가치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i. **해외법인 손실**, 단 **해외 법인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해외 법인**이 **자회사**인 경우; 또는
ii. **해외 법인 손실**, 단 **해외 법인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소유 지분**이 **지배 지분**인 경우; 또는
iii. **해외 법인 손실** 시점에 **해외 법인 손실**에 **소유 지분**을 곱한금액, 단 **해외 법인**이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유 지분**이**지배 지분**이 아닌 경우; 또는
iv. **해외 법인 손실**, 단 **최초 기명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여기 포함된 내용 또는 본 **보험약관**에 다른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보험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실**에 대해 **최초 기명 피보험자**에게 보상합니다. 단, 본 **보험약관**의 해당되는 면책조항, 보상한도액 또는 담보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조건 및 조항을 따릅니다.

어느 규제기관, 정부, 정부기관, 사법 또는 행정부처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현지 증권** 하에서 해외관할법원 내 담보되거나 지급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본 **보험약관**의 조건 및 조항을 그러한 **현지 증권**의 **피보험자들**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검토할 것임을 의도합니다. 본구절은 **보험약관**상 **보험한도**, **자기부담금**, 비갱신, 방어할 의무, **손해배상청구 비용**의 보상한도액내 포함여부, 세금, 법률준수 또는 배상청구 기준 혹은 손해사고 기준 규정을 명시하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당사는 마치 **해외 법인 손실**, **소유 지분** 또는 **지급의무**가 **최초 기명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본

 보험약관의 면책조항 및 기타 제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항 및 조건들에 따라 **해외 법인 손실**, **소유 지분** 또는 **지급 의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b. **해외 법인**에서 인지된 본 보험과 관련한 주요정보는 **최초 기명 피보험자**에게도 인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c. **최초 기명 피보험자**는 당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i. 자체이름으로, 다만당사의 비용으로 **해외 법인 손실**이 발생한관할권에 인가되고 당사가 승인한 손해사정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ii. 법령에서 허가하는 한, 그러한 손해사정 전문가와 협력할 권한을 당사에 부여합니다;
 iii. 그러한 손해사정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당사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iv. 장부, 기록, 영수증, 바우처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해외 법인 손실**의 조사, 조정, 방어 및 합의를 통제할 권한을 획득합니다.

최초 기명 피보험자는 **해외 법인**이 현지법령 및 규제에서 허용하는 한 **현지 증권**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우선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제, 보상, 또는 합의를 얻기 위해 당사가 필요로 하거나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수행하고 동의하며 또한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합니다.

해외 법인 손실과 관련하여 당사가 **최초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 또는 합의한 금액에 대해 그 이후에 **해외 법인**이 회수를 한 경우에는 **최초 기명 피보험자**는 즉시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합의금을 당사에 지급해야합니다.

9.2 지배 증권(Master Policy)의 대응

여기 포함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A.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보험기간**에서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데 담보지역 내 법령이 본 **보험약관**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본 **보험약관**은 해당 담보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담보지역 내 시설로 비롯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B.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보험기간**에서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데 **현지 증권**이 본 **보험약관**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마치 본 보험약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특별조건제 9.3 조 및 제 9.4 조가 적용됩니다;

C. 본 **보험약관** 상 지급된 금액 및 **현지 증권**의 정의 A 구절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보험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발급된 **현지 증권** 하에서 지급된 모든 금액은 본 **보험약관**의 **보험증권명세** 상에 명기된 **보험한도**를 감소시킵니다;

D. 개별 **현지 증권**과 관련하여 본**보험약관**은 해당 **현지 증권** 하에 적용되는 공제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및 본 **보험약관**의 **보험증권명세**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 **현지 증권**의정의 A 구절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보험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발급된 **현지 증권**하에서 지급된 금액이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초과된 금액은 피보험자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본 특별조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의 개시이전 또는 중단된 이후에 유효한 **현지 증권** 하에서 보상이 적용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9.3 보험조건 차이(Difference in Conditions)

현지 증권 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으나 가입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이 거절된 경우에는 본 **보험약관**은 만약 본 **보험약관** 하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단, 보험회사는 **현지 증권** 하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금액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9.4 보험한도 차이(Difference in Limits)

현지 증권 하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여 총 청구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보험약관**은 **현지 증권**에서 지급되어야 할 보상한도액과 본 **보험약관**의 **보험증권명세**에 기재된 해당 **보험한도**와의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 **보험약관**에 포함되거나 배서된 보험조건, 정의, 면책조항 및 조항들은 본 특별조항 보험한도 차이(Difference in Limits) 조항 하에 보험회사의 책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9.5 미국/캐나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미합중국 또는 캐나다 혹은 그 해당국의 관할지역내에서 제기되거나 기원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률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A. 본**보험약관** 상 지급해야할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은 본 **보험약관**의 **보험증권명세**에 기재된 해당 **보험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B. 본 보험약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보험은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본 보험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연기, 증기, 그을음, 증기, 산성, 알칼리성, 유독 화학물질, 액체 또는 가스, 폐기물 또는 기타자극적 물질, 오염물질의 토양, 대기 또는 수역으로 방출, 분산, 배출하는 것에 기인한 배상책임;
 ii. 자극적 물질 또는 오염물질을 시험, 평가, 모니터링, 정화, 제거, 봉쇄, 처리, 해독 또는 중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구 혹은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당사는 그러한 배생책임, 비용 또는 기타 구제를 얻기 위한 그 어떤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방어할 의무가 없습니다.

9.6 보험한도

A. 손해배상청구의 수 또는 본 **보험약관** 또는 **현지 증권** 하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피보험자**의 수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모든 **손실**, **해외 법인 손실**, **소유 지분**, 또는 **지급의무**의 총보상한도는 본 **보험약관** 상 적용되는 최고 **보험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B. 당사의 **계열회사**에서 발급한 **현지 증권**에서 **해외 법인 손실**, **소유 지분**, 또는 **지급의무**로 지급된 금액은 본 특별조항의 효력으로 지급해야 할 **손실**의 계산 시 제외되며 그로 인해 본 **보험약관**의 **보험한도**를 감소시킵니다.
C. 본 보험약관 및 현지증권 하에 지급된 모든 금액의 총액은 본 보험약관의 보험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보험회사**가본 **보험약관** 하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액이 해당최고 **보험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명세**에 정해진 총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본 **보험약관** 및 **현지 증권** 하에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최초 기명 피보험자**는 본 **보험약관** 상 **보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모든 금액을 **보험회사**로 돌려주어야 하며, 지급해야할 모든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E. **최초 기명 피보험자**는 상기 D 조항에 따른 모든 지불액을 **보험회사**에게 해당금액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7 일 이내에 보험회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초 기명피보험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자 기준 월 LIBOR 금리에 2%를가산한이자율로경과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F. **현지 증권**이 발급된 경우, 적용되는 모든 자기부담금액은 **보험증권 상세**에 정해진 **자기부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9.7 현지 보험사의 파산

현지 증권 하에서 지급되어야 할 손해배상청구가 **현지 증권**의 보험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보험약관**은 만약 본 **보험약관** 하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만:
A. 만약 그러한 **현지 증권**의 보험회사가 당사의 **관계회사**가 아닌 경우, 본 **보험약관** 상 한도액 또는 금액은 해당 **현지 증권**의 보험회사가 보유한 금액 또는 해당 **현지 증권** 하에 당사또는 당사의 **관계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로 재보험 출재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B. 당사는 해당 **현지 증권** 하에 적용되었을 공제금액, 자기부담 또는 자체 부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C. 본특별조항은 해당 현지 증권의 보험회사의 청산인, 파산 관재인 또는 승계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본 특별 조항 하에서 당사에 의해 지급된 합의금에 대하여 해당 **현지 증권** 하에서 **피보험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 합의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즉시 당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E. 본 특별 조항 하에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i) **피보험자**가 **현지 증권**의 보험사의 **파산**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당사에 서면통보 해야 합니다;

(ii) **현지 증권** 하에 이용가능한 모든 권리를 추구하고 **현지 증권**상 **피보험자**가 그러한 모든 권리를 추구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iii) 본 **보험약관** 하에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현지 증권**상 **피보험자**가해당 현지 증권 하에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v)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 증권** 하에 **피보험자**가 이미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선언된 진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v) 당사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당사가 다른 출처로부터 가능한 모든 복구 및 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8 특별 조항에 적용되는 추가 정의

관계회사란 당사를 궁극적인 지주 회사로 하는 당사 내의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배 지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소유 지분**을 의미합니다:

A. 50% 이상; 또는

B. 15% 이상, 단해 당 **소유 지분**이 **해외 법인**에 최대주주권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증권명세**상에 첫번째로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해외 법인이란 **최초 기명 피보험자가** 지속적인 운영으로 재정적이익을 얻거나 또는 그 운영으로 손실 또는 피해를 입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법인(**보험회사**가 면허를 얻지 않았거나 허가 또는 그 밖에 법적으로 그 법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위치)을 의미합니다.
해외 법인 손실이란 모든 면책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 **보험약관**의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손실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해외 법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지불한 모든 손실을 의미합니다.
파산이란 **현지 증권**의 보험사의 부도 또는 파산 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을 최종 판결 또는 합의 날짜로부터 합당한 시간내에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하는 손실은 **최초 기명 피보험자**가 **해외 법인 손실**의 결과로 직접 또는 중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가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현지 증권이란:

A. 다음에 의해 발행된 보험증권으로:

i. **관계회사**;

ii. **관계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iii. **관계회사**가 위임한 타보험회사;

본 **보험약관**이 지배 증권(master policy)이 되는 보험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대한민국 이외의 국각에서 현지 보험을 제공하기위한 증권; 또는

B. 앞서 말한 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면서 본 **보험약관** 하에 보상되는 위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발행된 **보험증권**을 말합니다.

지급 의무란 **최초 기명 피보험자**가:

A. 소유 지분이 없거나 지배지분이 아닌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경우 든 최초 기명피보험자 또는 중간 자회사가 아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

i. **해외 법인 손실**에 대해 **해외 법인**에 합법적으로 상환해야 할 책임; 또는

ii. **최초 기명 피보험자** 또는 중간자회사가 **해외 법인**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되는 책임에 따라 해외 법인을 위해 본 보험약관 하에 보상되는 위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할 책임; 또는

B. **지배 지분**이 아닌 **소유 지분**을 가지면서 **최초 기명 피보험자** 또는 중간 자회사가 **해외 법인**을 위해 본 보험약관 하에 보상되는 위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할 책임을 말합니다.

소유 지분이란 **최초 기명 피보험자**가직접 또는 중간자회사를 통해 **해외 법인**에 갖고 있는 소유권 비율을 의미합니다.

특별약관

1. 전쟁, 사이버 작전 보장제외 특별약관(LMA5564)

1. 이 보험의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전쟁이나 사이버 작전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책임, 비용 또는 경비(통칭하여 "손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보험자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의 state 귀속

3. 사이버 작전의 영향을 받는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state 의 정부(그 정보 및 보안 서비스 포함)가 사이버 작전을 다른 state 혹은 그 대리인에 귀속시킬지 여부는 사이버 작전의 귀속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사이버 작전의 영향을 받는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소재한 state(정보 및 보안 서비스 포함)의 정부가 귀속성을 결정할 때까지, 보험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사이버 작전을 다른 state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손실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사이버 작전의 영향을 받는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state 정부(정보 및 보안 서비스 포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1. 사이버 작전을 다른 state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데 불합리한 시간이 걸리거나
 5.2. 귀속시키지 않거나
 5.3. 귀속시킬수 없음을 선언
 위 경우 보험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증거를 참고하여 귀속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의

6. 컴퓨터 시스템이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 전자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의미하며, 상기의 유사한 시스템 또는 구성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된 입력, 출력,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킹 장비 또는 백업 설비를 포함합니다.
7. 사이버 작전이란 state 또는 state 를 대신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state 의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방해, 거부, 열화, 조작 또는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state 는 주권이 있는 state 를 의미합니다.
9. 전쟁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9.1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항하거나 내전, 혁명, 반란 및/또는 내전의 일부로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행위
 9.2. 정부, 공공 또는 지방 당국의 명령에 의한, 또는 명령에 의한, 또는 재산에 대한 군사력 또는 강탈,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
 전쟁 선포와는 무관합니다.

2. 감염병 보장제외 조항 (LMA5399)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감염병 또는 그 감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관계없이)에 기인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감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2.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2.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

3. 의무보험 확장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제 1 조 1.1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및 제 4 조 4.65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가 누출 · 누설 ·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3 조 2 항에 따른 배액배상금 및 동법 제 43 조의 2 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3.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 조의 2 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및 동법 제 39 조 제 3 항에 따른 배액배상금을 포함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2, 3 호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4. 특정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과 관련, 근거 및 이에 기인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통약관 및 여타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보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조건은 동일합니다.

5.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1. 본 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____ 분할로 지불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a) 첫 번째 분할납(%) 개시일부터 지불 가능
b) 두 번째 분할납(%)은 _____에 지불해야 합니다.

()번째 분할납(%) 만기일은 _____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위의 납부기한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납부기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 계약에 따라 지불된 분할 보험료를 초과하는 청구가 발생할 경우, 당시 미납된 보험료의 분할 납입 기한이 만료되어 즉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의 약관,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 변경,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자기부담금 승인 특별약관

보장 범위에 다음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보험에 따라 손실에 대해 우리가 지불할 금액은 이 보험 계약의 자기부담금 섹션에 설명된 자기부담금 비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의 섹션이 추가됩니다;

피보험자는 일정에 자기부담금 비율(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몫)로 표시되는 이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 비율(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몫)을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무보험자에게 지불하고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은 그러한 손실의 남은 비율에만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는 발생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불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통지를 받은 후 증권에 표시된 첫 번째 기명 피보험자는 즉시 해당 금액 전액을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및 당사가 지불하는 합리적인 관련 비용 및 경비. 당사에 즉시 환급하지 못하는 것은 최초 기명 피보험자가 환급 만기일 현재 이 보험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분담액은 공제액 또는 자가보험 유보금을 적용한 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몫은 보험 한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증권
자기부담금 비율: 손실의 ()%

다른 모든 정의 및 조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7.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8. 손해조사 협조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조항에도 불고하고 이 조항은 이 증권상 담보하는 배상책임의 전제 조건입니다. ;
(1) 원 보험사는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만한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재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원 보험사는 배상청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재보험자는 위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합의, 협상 등을 대행할 손해사정인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습니다.
(4)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타협도 이루어지거나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9.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10.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도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1. 사회공학 사기 담보 특별약관

자금 또는 재산의 양도, 지급, 인도 또는 수령을 승인, 지시 또는 인정하도록 피보험자에게 지시한 서면, 전자 또는 전화 지시 또는 조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믿고 피보험자가 자금 또는 재산을 이체하거나 신용을 설정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공학 사기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공급업체, 고객, 피보험자의 직원 또는 이사, 금융기관 또는 기타 제 3 자가 서명했거나 출처를 밝히거나 보증한 것으로 주장하는 지시 또는 조언; 모든 사항은 승인되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사전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지만, 사칭을 하려는 적법한 사람의 인지 및 동의 없이 사기적인 사칭자가 지시나 조언을 한 경우입니다.)

본 특별약관에서만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사회 공학 사기란 피보험자가 자금 또는 재산을 송금, 지급, 인도 또는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직원을 사기 사칭자가 인증 후 해당 사기 사칭자가 피보험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의 송금, 지급, 인도 또는 수령을 승인, 지시 또는 승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의도적이고 사기적으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 사칭자란 피보험자의 직원을 사기로 속일 목적으로 다른 자연인을 사칭하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인증이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 내용을 인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 지시 또는 조언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공급업체, 고객, 피보험자의 직원 또는 이사, 금융 기관 또는 기타 제 3 자 간에 또는 피보험자의 사무실 또는 부서 간에 교환된 유효한 테스트 키를 첨부하는 것. 또는
2. 지시 또는 통신을 시작하고 그러한 지시 또는 조언의 전송을 시작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화하는 경우.

본 특별약관으로 보험사가 책임지는 최대한도금액은 각 사고당 & 총한도 USD _____ 입니다.
이 금액은 명세서에 기술된 보상한도액의 일부이지 보상한도액에 추가되는 금액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된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본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초과금액(자기부담금)은 각 사고당 USD _____ 입니다.
기타 모든 보험조건은 변화없이 동일합니다.

1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다수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계약자)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다수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약관 등의 교부)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 약관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4.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 매6개월 □, -기타 □, ()

제4조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중
 - 매주 □, - 매6개월 □, -기타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 (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 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적용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양식1]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품구입일	날 인

15. 기술 지원 손실 면책 특별약관

다음과 같이 **보험약관**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5 조. 면책조항에 다음을 추가하도록 수정합니다:
당사는 이하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 손실

제 1 조 기술 배상책임 및 제 2 조 사이버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수명이 다하거나 지원 기한 만료, 또는 판매자의 기술 지원이 만료, 중단 또는 불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인, 또는 이와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본 **보험약관**의 모든 다른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6. 인프라와 서비스 휴지 기본 면책 특별약관

다음과 같이 **보험약관**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5조 - 면책, 면책조항 제5.16조 인프라 중단 전체를 삭제하며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당사는 이하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프라와 서비스 휴지

다음에 대한 실패, 방해, 휴지, 또는 중단에 근거하거나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보험 계약 1.2, 1.3 및 제2조 사이버위험관리에 한정된 손실

A. 서지, 스파이크, 전압저하, 또는 정전을 포함하는 전기. 단, 해당 **손실**이 **귀하**의 직접적인 운영 통제하의 전기 시스템의 정전, 서지 또는 감쇄와 관련되어 있으며 **컴퓨터 악성 행위**, **권한 없는 사용 또는 접근**, **정보통신 보안**의 실패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제외.

B. 가스

C. 물

D. 위성

E. 귀하가 직접적인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모든 인터넷 인프라 또는 통신 인프라

F.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의 최상위 도메인 또는 DNS 루트 구역 서비스를 포함하는 인터넷 접근 또는 통신 서비스.

본 보험약관의 모든 다른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7. 생산물 배상책임 배상청구기준 특별약관

다음과 같이 **보험약관**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 보험계약 제 3.1 조는 전체 삭제되며,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3.1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계약

A.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사고의 결과로 보험 기간 내에 최초로 발생한, 계약상 배상에서 귀하가 지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B. 당사는 사업 관련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보험 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귀하가 계약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책임으로 인한 것을 포함해 귀하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지불한다. 단, 개인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는 생산물 배상책임 소급담보일 혹은 그 이후,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초로 발생하고, 제 8.16 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되어야 한다.

B. 본 보험약관에는 다음의 용어가 추가된다:
생산물 배상책임 소급담보일이란 <<소급담보일 입력>>

C. 제 8.15 조 비갱신 보고연장기간은 전체 삭제되며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8.15 비갱신 보고연장기간

A. 만료 시, 본 보험약관에 의거한 보험계약이 갱신되지도 않고 보험자의 해당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대체되지도 않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i.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60 일의 보고연장기간

ii. 기명피보험자는 당사가 합의한 추가 보험료 지불을 당사에 신청하고 당사는 본 보험약관에 따른 담보를 보험 기간 만료일로부터 자동 60 일의 기간보다 긴 보고연장기간 동안 연장할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B. 본 조항 하의 확장 담보는 다음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

i. 제 1 조 - 기술 배상책임과 모든 해당 확장담보, 기술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행위 또는 미디어 행위

ii. 제 3 조 -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책임 항목 B 및 모든 해당 확장담보, 제품 결함의 최초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

단, 이는 보험 기간 만료 전에 발생하고, 보고연장기간 만료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C. 본 조항하의 본 보고연장기간을 행사하려면 기명피보험자는 보험 기간의 만료 후 60 일 이내에 다음을 해야 합니다.

i. 더 긴 보고연장기간을 구매하기 위해 당사에 서면 요청을 제공해야 하고,

ii. 더 긴 보고연장기간을 개시 시에 완전히 경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D. 기명피보험자는 경영권의 변경 발생 시 본 조항하의 보고연장기간을 구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E. 본 보험약관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추가 보험료는 지불 시 완전히 경과된 보험료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F. 기명피보험자는 당사가 본 보험약관과 다른 갱신 조건, 조건, 배상책임 또는 보험료의 한도를 제시하는 것이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G. 기명피보험자가 유사한 보험 보장을 받는 경우 및 그 날짜부터 보고연장기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미 구매한 보고연장기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보험료는 보고연장기간 개시 시 완전히 경과된 보험료가 됩니다.

본 보험약관의 모든 다른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